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4개 특별자치시·도 자치경찰 이원화 공동 학술 세미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4개 특별자치시·도 자치경찰 이원화 공동 학술 세미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4개 특별자치시·도

자치경찰 이원화 공동 학습 세미나

2024. 9. 30.(월) 13:00~ | 세종시청 4층 여민실

진행순서

| | 시 간 | 내 용 |
|-------|------------------------|--|
| 준 비 | 13:00 ~ 13:15 (15') | ◦등록 및 참석자 안내 |
| 개 회 식 | | |
| 개 회 | 13:15 ~ 14:00 (45') | ◦국민의례 및 내빈소개 * 사회: 김순환 경위(세종자치경찰위원회) ◦개회사 남택화 위원장(세종자치경찰위원회) ◦환영사 한영수 원장(한국법제연구원, 김영진 원장(대전세종연구원) ◦축 사 최민호 시장(세종특별자치시), 김효숙 부의장(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교진 교육감(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원호 청장(세종경찰청), 강준현 국회의원, 김종민 국회의원, 우동기 위원장(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육동일 회장(전국시도지방시대위원회협의회) ◦인사말 한진호 회장(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조명수 위원장(강원자치경찰위원회), 이연주 위원장(전북자치경찰위원회), 박영부 위원장(제주자치경찰위원회) |
| 휴 식 | 14:00 ~ 14:15 (15') | ◦기념촬영 및 장내 정리 |

| 시 간 | 내 용 | |
|--|------------------------|--|
| [제1주제] 한국자치경찰의 태동! 세종자치경찰의 방향성 및 전략 | | |
| 세미나 | 14:15 ~ 14:30 (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제 1 "세종형 자치경찰 이원화 모형: 광역경찰대응단 및 커뮤니티경찰 센터를 통한 공동체치안 활동을 중심으로" - 김흥주 책임연구위원(대전세종연구원) |
| | 14:30 ~ 15:50 (8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론 및 질의응답 * 가나다 순 [좌장] 이상훈 교수(대전대학교) [토론] 김영식 위원(세종자치경찰위원회), 김현미 의원(세종특별자치시의회), 류제일 실장(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이희택 부장(중도일보), 장일식 부원장(경찰대 자치경찰발전연구원), 차인호 소장(세종 북부서 전의파출소), 최인수 실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 최환용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홍나영 의원(세종특별자치시의회) |
| | 15:50 ~ 16:00 (10') | ◦휴식 |
| [제2주제]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한 법적 쟁점 및 과제 | | |
| 세미나 | 16:00 ~ 16:30 (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제 2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한 법적 쟁점" - 이기춘 교수(부산대학교) ◦발제 3 "행정수도와 지방시대를 지향하는 자치경찰제 방향과 전략" - 최지민 부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 16:30 ~ 17:50 (8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론 및 질의응답 * 가나다 순 [좌장] 유인호 의원(세종특별자치시의회) [토론] 고철용 센터장(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김광운 의원(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일순 본부장(충청투데이), 박점순 과장(세종시교육청 학교안전과), 박충서 과장(세종남부서 형사과), 서준배 원장(경찰대 자치경찰발전연구원), 성은정 위원(세종자치경찰위원회), 윤태웅 선임연구위원(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이현정 의원(세종특별자치시의회) |
| 폐 회 | 17:50 ~ 18:00 (10') | ◦총평 및 폐회사 남택화 위원장 (세종자치경찰위원회) |



목 차

인 사 말

개 회 사

| | |
|--------------------|----|
| 남택화 위원장(세종자치경찰위원회) | 12 |
|--------------------|----|

환 영 사

| | |
|-----------------|----|
| 한영수 원장(한국법제연구원) | 14 |
| 김영진 원장(대전세종연구원) | 16 |

축 사

| | |
|---------------------|----|
| 최민호 시장(세종특별자치시) | 19 |
| 임채성 의장(세종특별자치시의회) | 21 |
| 최교진 교육감(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23 |
| 한원호 청장(세종경찰청) | 25 |
| 강준현 국회의원 | 27 |
| 김종민 국회의원 | 29 |

인 사 말

| | |
|------------------------|----|
| 한진호 회장(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 30 |
| 조명수 위원장(강원자치경찰위원회) | 32 |
| 이연주 위원장(전북자치경찰위원회) | 35 |
| 박영부 위원장(제주자치경찰위원회) | 36 |

제1주제 | 한국자치경찰의 태동! 세종자치경찰의 방향성 및 전략

| | |
|---------------------------|----|
| 발 제 1 | 41 |
| -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
| 토 론 문 | 56 |
| - 김영식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위원 | |
| - 김현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 |
| - 류제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장 | |
| - 이희택 중도일보 부장 | |
| - 장일식 경찰대학교 자치경찰발전연구원 부원장 | |
| - 차인호 세종북부서 전의파출소장 | |
| -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장 | |
| -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 - 홍나영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 |

제2주제 |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한 법적 쟁점 및 과제

| | |
|--------------------------|-----|
| 발 제 2 | 81 |
| - 이기춘 부산대학교 교수 | |
| 발 제 3 | 93 |
| -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
| 토 론 문 | 104 |
| - 고철용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 |
| - 김광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 |
| - 김일순 충청투데이 본부장 | |
| - 박점순 세종시교육청 학교안전과장 | |
| - 박충서 세종남부서 형사과장 | |
| - 서준배 경찰대학교 자치경찰발전연구원장 | |
| - 성은정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위원 | |
| -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 |

|

인사말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남택화입니다.

먼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4개 특별자치시·도 자치경찰 이원화 학술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내외빈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세미나를 주관하고 시종일관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님과 김흥주 박사님,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님께 특별한 경의를 표하고,

평소 자치경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세미나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최민호 시장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빛내주신 김효숙 세종시의회 부의장님과 시의원님, 김종민 국회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주신 한진호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님과 조명수 강원 자치경찰위원장님, 이연주 전북 자치경찰위원장님, 박영부 제주 자치경찰위원장님, 각 시·도 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지 어느덧 4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자치경찰제도가 처음 시행되었고 그에 따라 전국 18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가 불완전한 제도적 뒷받침속에서 처음 시작하는 과도기였다면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도를 정착시켜 발전과 성장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안으로는 복지와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고, 밖으로는 주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에 의한 진정한 치안자치시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게 많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우선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이 집행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2024년에 세종, 강원, 전북, 제주특별자치시·도에서 이원화 모델을 시범 실시하고 2026년에 전면 실시를 목표로 하였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현재까지 어떠한 형태의 권고안도 나오지 않는 등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4개 특별자치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늘 세미나를 통하여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방향을 짚어보고, 정부가 약속한 이원화 시범 실시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지방자치는 행정자치, 교육자치 뿐만 아니라 치안자치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지방자치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인 세종시에서 치안자치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고, 오늘 세미나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30.

한국법제연구원장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한영수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및 경찰대학교 자치경찰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술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번 공동 학술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해주신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 남택화 위원장님, 대전세종연구원 김영진 원장님,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고철용 센터장님, 경찰대학교 자치경찰발전연구원 서준배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축사 및 인사말씀을 전해주시는 최민호 시장님, 김호숙 부의장님, 최교진 교육감님, 한원호 청장님, 강준현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우동기 위원장님, 육동일 회장님, 한진호 회장님, 조명수 위원장님, 이연주 위원장님, 박영부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일 세미나에서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4개 특별자치시·도 자치경찰 이원화”를 주제로 자치경찰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여 진정한 지방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17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후 현재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행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타 시·도와 달리 자치경찰단을 별도로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도 경찰청과의 업무 중첩 등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자치경찰 이원화’는 자치경찰제의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에 해당합니다.

정부도 국정목표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의 내용으로 “자치경찰권 강화”를 제시하고,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의 마련 및 시범실시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의 발전 방향’ 및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한 법적 쟁점’을 논의하는 오늘의 세미나가 자치경찰제의 미래적 발전 방향과 관련 정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으로 기록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우리 한국법제연구원도 자치경찰제의 발전을 위한 국가의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힘써주신 분들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30.

대전세종연구원장 환영사



안녕하세요?

대전세종연구원장 김영진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최민호 세종특별시장님, 김호숙 세종특별시의회 부의장님, 최교진 교육감님과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님, 한국법제연구원의 한영수 원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4개 특별자치시·도의 자치경찰 이원화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에 세종·강원·전북·제주 자치경찰 관계자 및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해 주실 우리 연구원의 김흥주 책임연구위원, 부산대학교 이기춘 교수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최지민 부연구위원님과 좌장으로 수고해 주실 대전대학교 이상훈 교수님,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님, 토론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치경찰제도가 시범적으로 시작된 이후 2021년 7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전국적 시행 기준으로는 약 3년이라는 짧은 기간입니다만 제주도의 시범 도입부터 계산한다면 약 18년이 지난 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치경찰제도는 기존의 국가경찰 체계와 병행하여 지역 특성에 맞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표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지만, 여전히 실효성 문제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자치경찰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도입, 국가경찰과의 명확한 역할 분담, 재정적 지원 확대, 그리고 주민 참여 강화와 같은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개 특별자치시·도부터 자치경찰의 역할을 강화하는 이원화 모델이 도입되어 성공한다면, 이는 다른 자치단체들에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사랑받는 자치경찰이 되는 자치경찰 제도 발전 방향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자리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30.

세종특별자치시장 축사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장 최민호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분들과 준비를 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4개 특별자치시·도 자치경찰 이원화 공동 학술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1년 자치경찰제가 우리나라에서 전면 시행 이후, 시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치안 시책들이 꾸준히
발굴되어 왔으며, 시민 중심의 소통의 폭도 점점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보다 완성도 높은 제도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운영 측면이나 법령·예산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세미나 덕분에 절반의 성공은 이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하고 목표했던 시책들이 조금씩 윤곽을 보이며 자리를 잡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학술 세미나는 세종자치경찰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그동안 세종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하였던 시책들을 내실화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예산, 사무,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유관부서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지원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미있는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3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축사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4개 특별자치시·도 자치경찰 이원화 공동 학술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치경찰 이원화에 대해 논의하며 귀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4개 특별자치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들을 비롯해 관계기관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도 어느덧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 지방정부와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자치경찰제가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 치안 서비스가 더욱 수준 높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자원 확보와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완전한 이원화를 국정과제로 공표하였고, 전국 4개 특별자치시·도에서 자치경찰제
이원화를 시범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세미나가 자치경찰제의 긍정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실질적인
과제들을 논의하는 중요한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자치는 자기의 일을 스스로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치경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독립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범죄 예방과 지역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더 큰 책임감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도 지방자치를 책임지는 일원으로서 자치경찰제의 성공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공동학술 세미나가 자치경찰제의 발전과 주민 안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길 기원하며, 함께 하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3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 축사



자치와 균형발전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자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중앙사무 이관을 비롯해 법적 제도적 보안을 통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제 정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 4년차를 맞았지만 국가경찰과의
관계에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 자치경찰 이원화로 온전한 자치경찰제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세종시를 비롯해 일부 특별자치시·도에서 자치경찰 이원화를 시범 실시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아직도 걸음이 더디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4개 특별자치시·도 자치경찰 이원화 공동 학술 세미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의 발제 내용이 세종형 자치경찰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치경찰제의
방향을 잘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교통 등 피부에 직접 와닿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이 시민의 곁에 있고, 시민은 자치경찰을 신뢰하는 사회 이런 사회를 위해 세미나에 참석하는 분들의
경험과 지혜가 모아지길 바랍니다. 공동 학술 세미나를 준비하느라 애를 쓰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30.

세종경찰청장 축사



안녕하십니까!
세종경찰청장 한원호입니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4개 특별자치시·도 공동 학술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세미나 제1주제의 주요내용이 '공동체 치안 활동을 중심으로한 세종자치경찰의 바람직한 방향성과 전략'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시청, 시의회, 자치경찰위원회 그리고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공동체가 함께 지역의 치안문제를 고민하고 대응해나가야 세종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종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자전거순찰팀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인도에서의 무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시청과 시의회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셨고,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함으로써 교통사고도 줄어들고 세종시민의 사랑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준비하신 남택화 위원장님과 여러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과 같은 여러 노력이 세종시민의 안전이라는 결실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30.

국회의원 축사



안녕하십니까.

세종시를 국회의원 강준현입니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4개 특별자치시·도 자치경찰 이원화 공동 학술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시는 세종자치경찰위원회 남택화 위원장님과 위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방분권의 이념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치안에 대하여 국가와 함께 주민의 의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자주적으로 자치경찰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참여를 통한 치안 서비스를 구현하여 지방자치 실현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급속한 치안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획일적인 치안정책에서 탈피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해 주민의 수요에 적합하고 다양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역 특성에 부응하는 치안정책 수립과 주요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세종형 자치경찰제를 함께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30.

국회의원 축사



안녕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갑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4개 특별자치시·도 자치경찰 이원화 공동학술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세종·강원·전북·제주 자치경찰위원회와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치경찰 이원화는 이러한 지역 맞춤형 치안을 실현하고 지방자치의 실질적 강화를 이루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따라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세종·강원·전북·제주가 공동 자문단을 구성하고 대정부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은 자치경찰 이원화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가 자치경찰의 방향성 및 전략 탐색을 통해 자치경찰의 미래 모색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아가 자치경찰 이원화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과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자치경찰 이원화는 자치경찰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자치경찰제의 이원화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세미나가 의미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길 기원하며, 참석하신 모든 분과 그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30.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 한진호입니다.

오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4개 특별자치시·도 자치경찰 이원화 공동 학술 세미나」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국 자치경찰위원장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의
귀중한 통찰이 오늘 세미나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치경찰제는 2021년 도입 이후,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통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범죄 예방 인프라 확충,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교통 안전 강화 등 다양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범죄 취약 구역에 대한 맞춤형 순찰 확대,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호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자전거 및 보행자 중심의 교통 안전 캠페인 등이 자치경찰의 주요
성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아직도 여러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제도적 미비점, 예산 확보의
어려움,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자치경찰이 독립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 구조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하는 점은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고, 지역사회에서의 이상동기 범죄와 같은 새로운
위협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경찰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자치경찰의
핵심 과제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치경찰제는 선진국에서 이미 사회 안전망의 중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치안 활동이 시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중앙집권적인 경찰 운영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자치경찰제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학술 세미나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이후 나타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지혜와 경험을 모아, 자치경찰제가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30.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반갑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조명수입니다.

먼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4개 특별자치시·도 자치경찰 이원화 공동 학술 세미나”를 준비해주신 남택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직원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표합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나면서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최대 화두는 국정과제로 채택된 '자치경찰 이원화' 가 아닐까 합니다.

이원화는 지리·사회·문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정책 실현을 통한 주민 만족과 자치경찰·행정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도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며 일관되게 경찰력을 집중할 수 있으며,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에 방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제도는 자치경찰 구성원의 부재, 위원회의 권한 미약, 지휘체계 중복 등 많은 문제점이 있고, 지난 1기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원화 실행의 촉구를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이원화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였지만 아직은 어떤 움직임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2기가 출범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전국 자치경찰위원회의 이원화 실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4개 특별자치시·도에 예정된 시범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한데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원화 실행에 가장 발목을 잡고 있는 지구대·파출소의 자치경찰 이관과 관련,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 “커뮤니티경찰센터”와 같은 대체 방안들에 대한 토론을 통해 이원화 시범실시에 한층 가까워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한국형 자치경찰의 모델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자리가 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4개 특별자치시·도 자치경찰 이원화 공동 학술 세미나”의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주어진 권한 안에서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 영위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위원회와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30.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장 이연주입니다.

자치경찰 이원화 공동 학술 세미나를 준비해주신 남택화 세종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4년차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정착에 있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자치경찰사무를 여전히 국가경찰이 수행하고 있고, 자치경찰사무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현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자치경찰 이원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올해부터 전북·강원·세종·제주
4개 특별자치시·도에서 이원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아직 정부 권고안조차 나오지 않아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정책 변화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현 제도내에서 주민이 원하는 치안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세미나 개최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자치경찰 이원화는 주민의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마련하여,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실질적인 정책 방안들이 논의되어 제대로 된 자치경찰 이원화 실현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발판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3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박영부입니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4개 특별자치시·도 자치경찰 이원화 공동 학술 세미나」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제2기 위원회가 지난 7월 본격 출범하여 100여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등을 비롯한 여러 관계 기관과 평소 자치경찰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전문가·학계 등의 발표자분과 토론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활동의 민주성과 주민지향성을 높이기 위해 광복 이후 70여 년간 꾸준히 논의되어 온 시대적 과제입니다. 지난 3년간 전국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하여 범죄예방, 시민의 안전 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개선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시책을 발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아울러,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자치경찰단이라는 조직을 20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 옐로카펫, 행복치안센터 운영 등 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여 커다란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4년차에 접어들었지만, 현재의 일원화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이 수행하는 자치경찰사무의 법적 성격의 모호성, 실질적인 인사권 부재, 안정적 재원의 부족 등 개선해야 할 제도적 문제점들이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공동 학술 세미나를 통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권 강화’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 이원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진정한 자치경찰제의 비전과 청사진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개선 방안이 제시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아낌없는 고견과 지혜를 모아 자치경찰제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30.

II

제 1 주제

발 제 1

세종형 자치경찰 이원화 모형

: 광역경찰대응단 및 커뮤니티경찰센터를 통한
공동체치안 활동을 중심으로

김 흥 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세종형 자치경찰 이원화 모형 : 광역경찰대응단 및 커뮤니티경찰센터를 통한 공동체치안 활동을 중심으로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2024. 9. 30.

세종형 자치경찰 이원화 모형:

광역경찰대응단 및 커뮤니티경찰센터를 통한
공동체 치안 활동을 중심으로

김 흥 주 책임연구위원

대전세종연구원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Contents

- 1 들어가며
- 2 자치경찰의 개념 및 제도 이해
- 3 세종형 자치경찰 이원화 모형 도출
- 4 광역경찰대응단 및 커뮤니티경찰센터 제안



발표(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현 정부 국정과제(111, 지방시대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에서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 마련 및 시범 실시가 논의됨
 ※ 세종, 전북, 강원, 제주를 중심으로 자치경찰 이원화 실시
- 
 이러한 국정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세종형 자치경찰 모형의 도출과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한 상황임
- 
 즉, 자치경찰이원화를 대비해 적극적인 대응 차원에서 '공공가치의 공동창출'의 관점에서 세종형 자치경찰 모형을 구체화해 제안할 필요성이 제시됨



발표(연구)의 목적



01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 사무 권한과 수반되는 인력, 재정 등을 구상해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도 안착 기여



02
 세종시가 바라는 자치경찰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숙지하여 바람직한 자치경찰 모형을 구상하는데 있음



03
 특히, 광역경찰대응단 및 커뮤니티경찰센터를 기획-제안(공동체 치안활동 강화) 하고자 함



자치경찰제의 개념

2. 자치경찰의 개념 및 제도이해



자치경찰제와 국가경찰제의 특징 비교

| | 국가경찰제 | 자치경찰제 |
|----|--|---|
| 개념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경찰 (경찰 유지권한과 책임은 국가에 귀속)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경찰 (경찰 유지권한과 책임은 지방에 귀속) |
| 임무 |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외에 국가의 이익보호와 질서 유지 지향 | 국민의 권익보호, 사회의 공공질서, 안녕에 집중 |
| 이념 | 집권성, 능률성, 합법성, 책임성 | 민주성, 중립성, 자치·분권성 |
| 장점 | - 조직의 통일적 운영 - 경찰활동의 능률, 기동성을 활용한 용이한 범죄수사 - 경찰단위 간 긴밀한 협조·조정용이 - 전국적·효율적인 시설이용 - 효율적 인력배치 | - 지방의 특성이 반영된 경찰행정활동 - 민주성 및 책임성 확보 - 치안에 주민참여 촉진 - 지역별 독립된 조직이기에 조직의 운영에 있어 개혁 용이 |
| 단점 | - 중앙의 정치적 의도 개입 가능 - 지역적 특수성 결여, 주민참여 부족 - 국민을 위한 봉사기능 저하 | - 범죄수사 등 전국·광역적 업무 불리 - 지방세력의 간섭으로 부패가능성 - 다른 경찰기관과 협조체계 어려움 |
| 국가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 영국, 미국, 벨기에, 네덜란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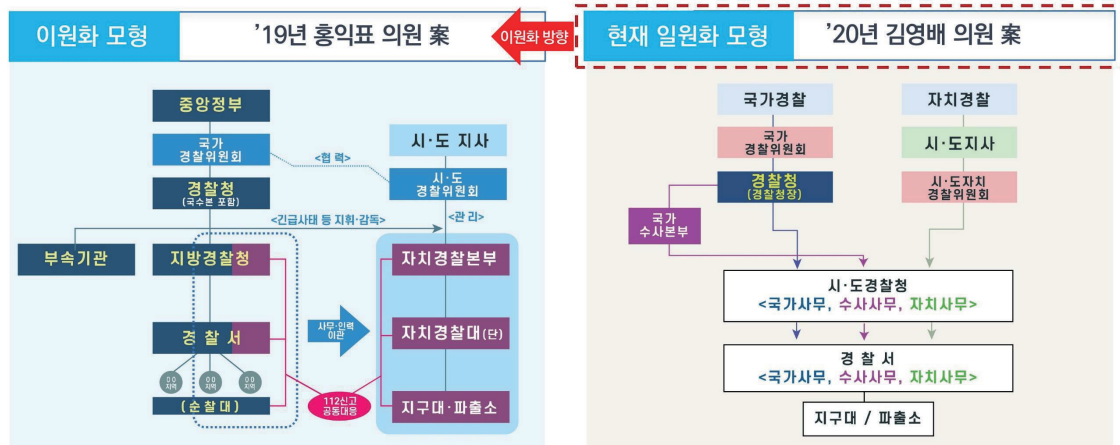
자료: 김홍주(2019:18)

자료: https://www.gyeongnam.go.kr/board/view.gyeongong?boardId=BBS_0000049&menuCd=DOM_000001602001000000&startPage=1&dataSid=41542862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 모형: 일원화 모형(국가 소속의 경찰이 자치경찰사무 수행)

2. 자치경찰의 개념 및 제도이해

자치경찰제 관련 법률안에 따른 모형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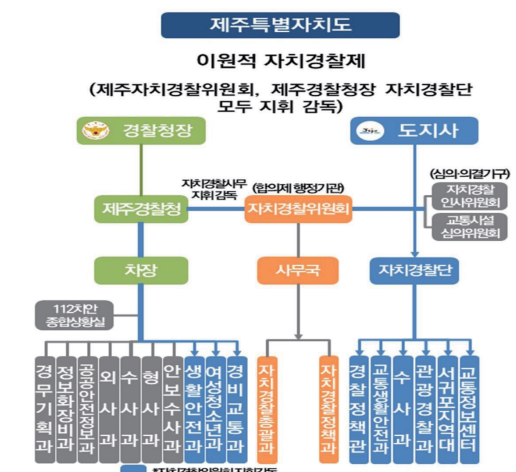
현 경찰 사무는 국가사무, 수사사무, 자치사무로 구분됨
 자치경찰은 범죄예방대응, 여성청소년, 교통사무가 중심



자료: 서준배·민경선·정일식(2023:13)

타시도와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조직도

타시도와 비교해 제주의 자치경찰제 운영 조직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자치경찰단 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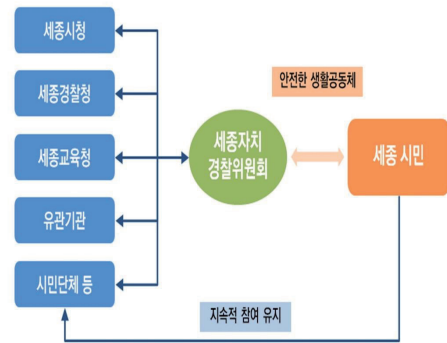
세종형 자치경찰 기본모형: 이원화 대비 공동창출 모형

세종경찰청: 5과, 2서(남-북), 기동대, 특공대

자치경찰위원회: 협력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안전한 생활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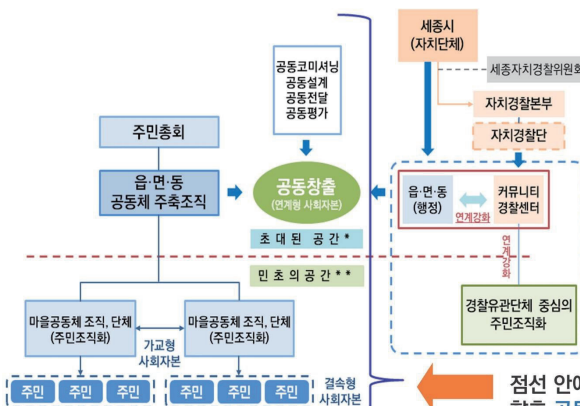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세종형 자치경찰 기본모형: 이원화 대비 공동창출 모형

세종형 자치경찰(지역사회경찰) 기본모형



곽현근(2015) 연구에서 창안한 풀뿌리 주민자치 생태계모형(공동창출모델)을 토대로 제안한 세종형 자치경찰 기본모형은 커뮤니티경찰센터를 통한 세종시의 안심공동체 실현을 위한 장이 되도록 설계함

[공공가치의 공동창출 논의]

- 공동창출의 전제조건: 자조(自助) 혹은 자기조직화
- 자기조직화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활동무대는 바로 '민초의 공간'임, 사회적 자본형성의 중요성 제시
- 공공가치의 공동창출 관점에서 공동체주축조직을 통해 공동창출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실천에 옮기는 것 뿐 아니라 읍면동 단위에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의 플랫폼 역할에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됨. 이를 위해 민초의 공간과 초대민 공간의 두 가지 활동무대가 함께 고려
- 민관협력,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등 지역공동체 플랫폼을 통해 주요 구성원으로서 자율방범대, 자전거순찰대, 의용소방대, 녹색어머니회, 청년회 등 다양한 마을공동체의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의 의제를 도출하여 읍면동 행정과 협의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모색하는 방향을 제시함
- 즉, 현재 자구대피소를 커뮤니티치안센터로 재편해 읍면동 행정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커뮤니티 안전센터로 하여금 지역의 자율방범대, 자전거 순찰대 등을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점진 안에서 보듯이 경찰유관단체와 협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향후 공동체 주축조직과 연계 가능한 방향으로 진화 해야 할 것임

세종형 자치경찰 모형 도출을 위한 전제

112 치안종합상황실 이관 필요성

- **(업무의 밀접성)**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주요임무가 치안상황에 대한 접수·지령 및 상황관리인 점, 지령의 주요 대상이 제1차 출동 요소인 지역경찰인 점, 상황관리 즉 초동조치의 지휘 대상에 지역경찰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점과 현재 행정적으로 112치안종합상황실이 지역경찰의 조직·인사 등에 대해 일반적 행정권을 갖는 점 등으로 볼 때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지역경찰은 상호 관련 정도가 밀접하다고 할 것이므로 두개의 부서는 동시에 이관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상 치안상황관리관의 분장사무에 112업무와 지역경찰업무를 규정(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19조 참조)
- **(치안의 효율성)** 현장출동·조치부서와 이를 지령·관리하는 부서는 일반적으로 지휘 체계로 보아야 하고, 지휘체계는 같은 공무원 신분을 갖는 조직이어야 함.
→ 만일 지역관서는 자치경찰본부 소속으로, 112치안종합상황실은 국가경찰 소속으로 둘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자치경찰본부)를 일반적으로 지휘하는 문제가 발생,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규정한 지방자치법(제183조)에 위배
※ 지방자치법 제18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 대한 균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세종형 자치경찰 모형 도출을 위한 전제

자치경찰 초동조치권

- **<자치경찰의 초동조치는 '현장보존' 중심>**
- 자치경찰의 현재의 초동수사권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과 별개로, 초동조치권도 그대로 보유해야 한다. 경찰 대응의 신속성은 범죄 피해자 만족도 결정 1순위로 작용하며, 현장경찰관에게 포괄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초동조치권'에 관한 직접적인 정의규정이 불비하여 형사소송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근거규정을 신설하거나 경찰법이나 자치경찰법(세종시특별법) 제정 내용에서 근거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초동조치권)** 현장출동한 지역경찰관의 경찰관직무집행법근거 위험방지, 출입, 보호 등, 현장보존
- **(초동수사권)** 현장출동한 지역경찰관의 형소법 근거, 현행법, 긴급체포, 영장 없는 압수수색 초동조치
- **(초동수사)** 후, 국가사무는 담당 사무 전담 직원에게 인계
- 자치단체의 특사경 수사 인력, CCTV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 민간협력단체 관리부서, 범죄 예방업무 등 유사 업무 자치경찰로 인력 조정
- 세종시 인구와 치안 수요 증가에 맞는 국비,정원 확보 필요(2023년 39만-2030년 80만)



세종형 자치경찰 모형 도출을 위한 전제

지역경찰 이관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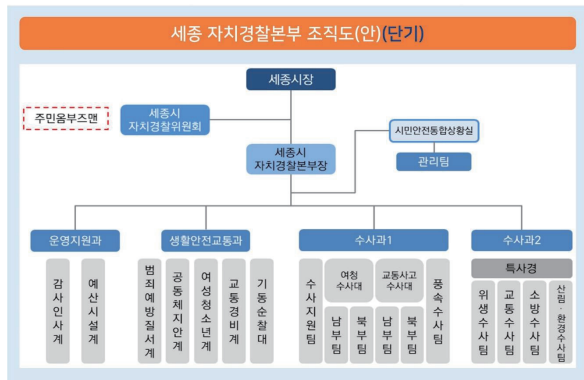
- **(자기책임성의 원칙 실현)** 치안상황(112신고)에 대한 1차 출동(책임) 부서가 지역경찰이고, 신고사건의 약 80%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지역경찰을 자치경찰본부로 이관하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
- **(대국민 편의성 도모)** 지역경찰이 국가경찰로 남게 될 경우 자치사무에 대한 신고출동 시 미온적일 수밖에 없고 특히 실종이나 자살의심 사건은 발견까지 많은 시간과 경력을 필요로 하고 있어 지역경찰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
- **(치안의 효율성 향상)** 하나의 지역에서 동일 유사한 사무를 두 개의 기관이 처리하게 되면 사건 떠넘기기 등 비효율성과 치안사각 지대 발생 야기, 이는 하나의 목표아래 업무를 기능적으로 배분하는 분업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여서 행정 실패 사례의 대표적 사례
 - ※ 동일 유사한 사무의 예 : 시비 소란은 성격상 물리력을 동반하기 쉽고, 물리력이 행사되었을 때 이것을 시비 소란과 독립된 폭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시비 소란 내의 행위로 볼 것인지 문제, 데이트 폭력의 경우 데이트라는 부분이 상당히 추상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인정 여부가 문제(연인관계가 아니면 단순 폭행이나 협박으로 처리)



⇒ **‘시민안전통합상황실’ 재편**
 (자치경찰 이원화시 112 + 119는 국가공무원소속으로 자치경찰업무 수행가능)



세종형 자치경찰조직: 단기-중기-장기



자치경찰본부 부터 설치
 이후, 남부, 북부 자치경찰단 신설



자치경찰인력 조정 및 기관 검토(단기, 중장기)

(국가경찰 기관(신규채용부다) 중심이어서 추가 재원 소요는 최소화(다수 파견)

112치안 종합상황실 + 119 종합상황실 + 통합 정보센터 + 과반 안전상황실 => 시민안전통합상황실

| 세종 자치경찰사무 담당 이관인력 추계 | | | | | 세종시 자치경찰 이관인력(단기) | | | | |
|----------------------|----------|---------|-------------|-----------|-------------------|---------------------------|-----------|----------|--------|
| 구분 | 합계 | 경찰관(현원) | 일반직(주무관 포함) | 자치경찰 이관인력 | 구분 | 현원 | 이관인력 | | |
| 세종형 | | | | | 경찰 (경찰청, 남북부서) |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사무 인력 | 180 | 72 | |
| 계 | 80(91) | 76 | 4 | 76 | | 112치안종합상황실 인력 | 28 | 16 | |
| 범죄예방 | 15(12) | 14 | 1 | 15 | | 지역경찰 | 201 | 20 | |
| 112상황실 | 8(9) | 8 | - | 4 | | 소계 | 409 | 108 | |
| 기동순찰대 | 28(49) | 28 | - | 28 | | 119종합상황실 인력 | 35 | 35 | |
| 여성청소년계 | 8(8) | 8 | - | 8 | | 소계 | 35 | 35 | |
| 여성청소년계 | 5(3) | 5 | - | 5 | | 특별사법경찰 인력 | 68(소방 21) | 34(소방 5) | |
| 교통계 | 13(7) | 10 | 3 | 13 | 통합정보센터 인력 | 32 | 32 | | |
| 교통사고조사 | 3(3) | 3 | - | 3 | 재난상황실 인력 | 15 | 7 | | |
| 계 | 216(169) | 211 | 5 | 100 | 소계 | 115 | 73 | | |
| 남부서 | | | | | 세종시 본청 | 총계 | 559 | 216 | |
| 범죄예방 | 7(6) | 7 | - | 7 | | 세종시 자치경찰 이관인력(중장기) | | | |
| 범죄예방질서 | 3(3) | 3 | - | 3 | | 합계 | 경찰청 | 소방 | 세종시 본청 |
| 112상황실 | 13(6) | 13 | - | 9 | | 320+a | 216+a | 35 | 69 |
| 여성청소년계 | 14(16) | 14 | - | 14 | | | | | |
| 여성청소년계 | 13(14) | 14 | - | 14 | | | | | |
| 교통안전 | 11(7) | 11 | - | 11 | | | | | |
| 교통안전 | 9(3) | 4 | 5 | 9 | | | | | |
| 교통사고조사 | 13(8) | 13 | - | 13 | | | | | |
| 지역경찰 | 132(107) | 132 | - | 20 | | | | | |
| 계 | 113(120) | 111 | 2 | 40+a | | | | | |
| 북부서 | | | | | | | | | |
| 범죄예방 | 4(4) | 4 | - | 4 | | | | | |
| 범죄예방질서 | 3(2) | 3 | - | 3 | | | | | |
| 112상황실 | 7(4) | 7 | - | 3 | | | | | |
| 여성청소년계 | 7(8) | 7 | - | 7 | | | | | |
| 여성청소년계 | 6(6) | 6 | - | 6 | | | | | |
| 교통안전 | 7(7) | 6 | 1 | 7 | | | | | |
| 교통안전 | 10(10) | 9 | 1 | 10 | | | | | |
| 지역경찰 | 69(79) | 69 | - | 69 | | | | | |
| 단기 총계 | 409(380) | 398 | 11 | 216+a | | | | | |
| 중장기 | | | | | | | | | |

세종형 자치경찰의 주요사무, 재원 및 시설, 인사권 및 인센티브 검토

세종 자치경찰의 주요사무 영역

| 구분 | 주요사무 |
|--|--|
| 자치경찰 기획·인사·교육 | 자치경찰행정 기획, 성과평가, 인사관리 및 교육, 예산·경리·운영, 제도 개선, 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력, 인력 및 장비 운용 등 |
| 생활안전 | 범죄예방, 아동 및 여성 등 사회적 약자보호, 안전사고예방, 학교폭력 예방,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 등 |
| 지역교통 | 교통안전 및 소통,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주민참여형 지역교통활동 지원 등 |
| 수사 | 가정폭력, 학교폭력, 음주운전, 교통사고, 공무방해 등 국가경찰과 같이 자치경찰이 수사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및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치안 및 이와 밀접한 수사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현상인 사건의 현장보존 중심의 초동조치권 부여(최소한의 초동조치권) |
| 특별사법경찰 | 산림보호, 의약품 단속, 공원관리, 식품단속, 공공행위단속, 환경단속, 관광지도, 청소년 보호, 차량운행 제한 단속 및 도로시설관리, 무단방화 자동차 단속, 문화재 보호, 농수산물 판매금지 표시단속, 하천감시, 중앙 및 지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 등 중장기적으로 형사정보시스템(KICS) 연계 필요 |
| 112치안 종합상황실 | 112신고 접수와 지령 각종 치안상황의 신속·정확한 파악·전파 및 초동조치 지휘 112신고 및 치안상황에 대한 기록유지 112신고 관련 각종 통계의 작성·분석 및 보고 |
| 119 종합상황실 | 주요 재난·사고 정보를 관계기관에 공유 재난상황 접수·전파를 통해 해당 기관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등의 상황관리 업무 |
| 119 통합상황실(명상사: 기능별 대응시: 유형별 지휘권 준수 규율(인) 마련) | 재난 상황 전파 및 보고에 관한 사항 119신고 접수·지령·처리 등 일련의 사항 이동전화위장정보 처리 운영에 관한 사항 119급상향관리센터 운영 전파에 관한 사항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정보·통신보안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 통합정보센터 | 방범, 교통, 시설물 등 수집된 정보를 저장 가공하여 통합적인 도시정보를 제공(U-CITY·서비스 제공)/교통시설물 설치관리사업, 도로구역 개신사업, 첨단교통정보제공 |

2023년 세종시 교통과태로 및 범칙금 부과납부현황(단위: 건,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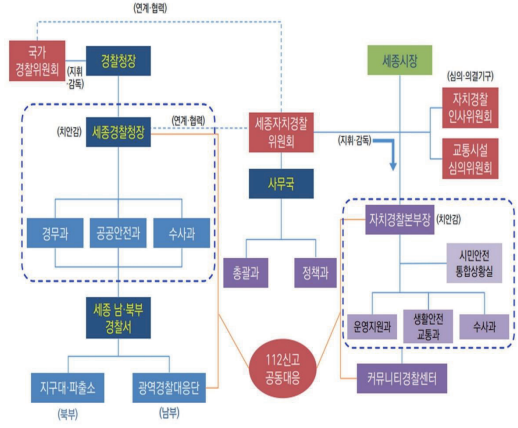
| 구분 | 건수 | 금액 | 세종특별자치시 | |
|-----------|-----------|------------|-----------|-----------|
| | | | 세종본부 | 세종남부 |
| 부과 | 계 | 199,827 | 43,870 | 155,957 |
| | 과태로 | 11,525,945 | 2,556,780 | 8,969,165 |
| | 범칙금 | 195,129 | 43,013 | 152,116 |
| 남부(남부일기준) | 과태로 | 11,314,585 | 2,517,410 | 8,797,175 |
| | 범칙금 | 4,698 | 857 | 3,841 |
| | 계 | 211,360 | 39,370 | 171,990 |
| | 과태로 | 188,305 | 44,403 | 143,902 |
| | 범칙금 | 10,096,577 | 2,502,788 | 7,593,789 |
| | 과태로 | 183,586 | 43,464 | 140,122 |
| 범칙금 | 9,878,622 | 2,457,508 | 7,421,114 | |
| 범칙금 | 4,719 | 939 | 3,780 | |
| 범칙금 | 217,955 | 45,280 | 172,675 | |

| | |
|------|---|
| 재원 | 이관인력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는 국비지원(세종시만 실시할 경우 균특회계 가능), 신규사업은 과태로, 범칙금 이관을 통한 재원확충(장기,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
| 시설 | 먼저, 자치경찰본부는 임대, 둘째, 자치경찰단은 경찰서와 공동사용, 셋째, 시민안전통합상황실은 관제센터 활용, 공간 재배치, 마지막으로, 커뮤니티경찰센터, 광역경찰대응단은 행복도시권내 지구대 및 파출소 공간활용(커뮤니티경찰센터), 청사 지구대 공간활용가능(광역경찰대응단) |
| 인사권 | (세종시장) 자치경찰본부장 및 단장에 대한 임명, 지휘권, 본부장 및 단장 임명은 자경위 복수추천,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심의 및 의결, 세종시장 일반적 지휘권, 본부장 미 단장 집행권 지휘권 부여 |
| 인센티브 | 치안행정과 지방행정간 직급 일원화, 계급정년제(경찰에게만 적용) 폐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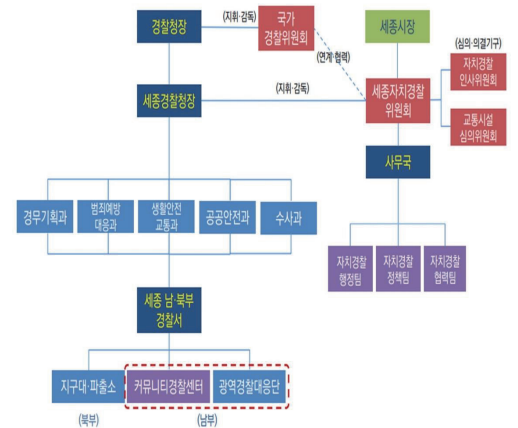
세종시 자치경찰 사무 지휘 및 감독 체계도(2가지 안)

이원화시 개편(안) 자치경찰조직으로 자치경찰본부, 시민안전통합상황실, 커뮤니티경찰센터 재편, 광역경찰대응단은 **남부서** 관할
현 제도유지시 개편(안) 경찰청-경찰서-커뮤니티경찰센터, 광역경찰대응단 **분리 개편**

세종시 자치경찰사무 지휘 및 감독체계도(이원화시 개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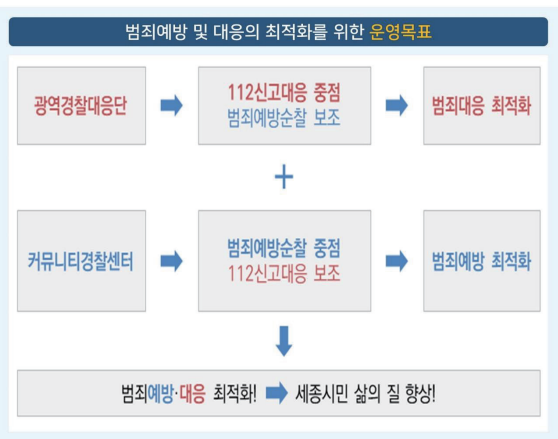


세종시 자치경찰사무 지휘 및 감독체계도(현 제도유지시 개편(안))



공동체치안 활동 운영 모델 제안

문제점 112신고 및 범죄율 발생 감소 추세, 한 지역에 신고가 집중되는 될 시 협업 및 신속 대응의 어려움, 방범 순찰의 한계로 범죄예방활동 한계
공동체 치안 활동 모델(1급지 대상 검토) 다중밀집지역 이상 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가시적 순찰활동에 매우 적합 모델



「국유재산법(행정재산)」 [참고: 전문가 의견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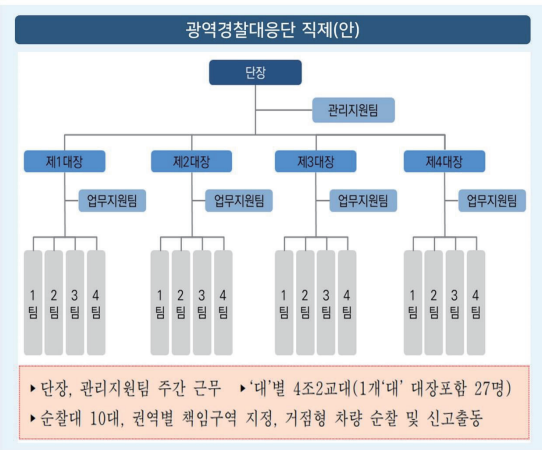
- 제30조(사용허가) 제1항에 따르면 "중량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 그 범위로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로 규정함 등법 제34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에 따르면 "중량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부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허가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사용허가하는 경우"가 가능함
- 자율방범대가 국유재산법 지구대·파출소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공법학)에게 자문을 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함
-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자율방범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및 지원하고 있음. 방제처는 "공공단체"의 의미에 관해 "공공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직이나 활동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등을 의미함. 이렇듯 공공단체에 관한 연구자께서 제시한 방제처의 유권해석에 비추어 보면, 자율방범대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이고, 법률과 조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권한이 있는 것임
- 따라서 자율방범대의 지도·감독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과 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제처 유권해석에 따른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자율방범대는 공공단체로 볼 수 있음. 요컨대 행정재산의 사용에 관해 "국유재산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의 경우 현행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제한적으로 보임



광역경찰대응단 설치(안)

광역경찰대응단장, 4개의 대 설치, 대장 이하 업무지원팀(4개 팀 구성), 112신고 대응 중심 사무수행

※ 기존 청사 지구대 공간 거점 활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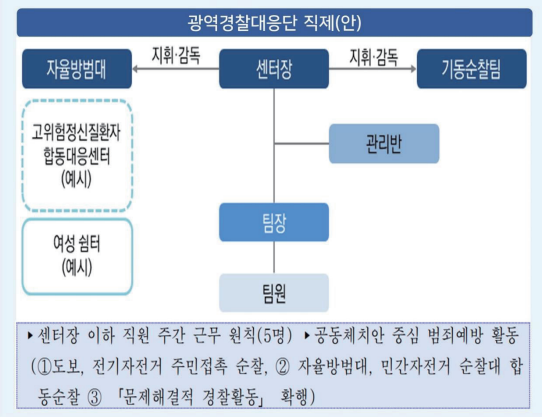


광역경찰대응단 직급 및 업무분장(예시)

| 구분 | 구분 | 업무내용 | 근무형태 | 인원 | 직급 |
|--------|----|--------------------------------|-------|-----------------|------|
| 광역대응단장 | | 광역대응 업무총괄 | 주간 | 1 | 총경 |
| 대응대장 | | 당일근무 광역출동 업무총괄 | 4조2교대 | 4 | 경정 |
| 관리지원팀장 | | 관리지원 총괄 | 주간 | 1 | 경감 |
| 관리지원팀원 | | 관리지원 | 주간 | 2 | 경위이하 |
| 대응팀장 | | 출동 현장 총괄 | 4조2교대 | 16 | 경감 |
| 대응팀원 | | 주업무 : 112신고대응 보조업무 : 범죄예방 등 | 4조2교대 | 76명 (대당 19명) | 경위이하 |
| 업무지원팀장 | | 업무지원 총괄 | 4조2교대 | 4 | 경감 |
| 업무지원팀원 | | 업무지원 | 4조2교대 | 8 (팀당 2명) | 경위이하 |
| 계 | | | | 112 | |

커뮤니티경찰센터 설치(안)

커뮤니티경찰센터장 이하 팀장, 팀원으로 구성. 자율방범대, 기동순찰팀을 지휘 및 감독
기존, 아름, 보람, 한솔지구대 등 유휴공간 활용 (국유재산법 검토 중, 법제처 질의준비 중) / 공동체 치안활동(범죄예방중심 활동)
자살예방대응센터, 여성심터, 고위험정신질환자 합동대응센터 공간 재편 가능



커뮤니티경찰센터 직급 및 업무분장(예시)

| 구분 | 구분 | 업무내용 | 근무형태 | 인원 | 직급 |
|-----|----|---------------------------|------|----|------|
| 센터장 | | 센터업무 총괄 | 주간 | 4 | 정경 |
| 관리반 | | 민원사무 등 | 주간 | 4 | 경위이하 |
| 팀장 | | 팀원사무 총괄 | 주간 | 4 | 경감이하 |
| 팀원 | | 공동체치안, 문제해결적 경찰활동, 무질서 단속 | 주간 | 8 | 경위이하 |
| 계 | | | | 20 | |

지구대 및 파출소 증별 연면적 현황

| 구분 | 구분 | 층별(m) | 연면적(m) |
|-------|----|-----------|-----------|
| 한솔지구대 | 1층 | 435(131평) | 814(245평) |
| | 2층 | 379(114평) | |
| 보람지구대 | 1층 | 459(136평) | 816(246평) |
| | 2층 | 364(110평) | |
| 아름지구대 | 1층 | 418(126평) | 836(252평) |
| | 2층 | 418(126평) | |
| 금남파출소 | 1층 | 177(53평) | 354(107평) |
| | 2층 | 177(53평) | |
| 청사지구대 | 1층 | 555(168평) | 921(278평) |
| | 2층 | 366(110평)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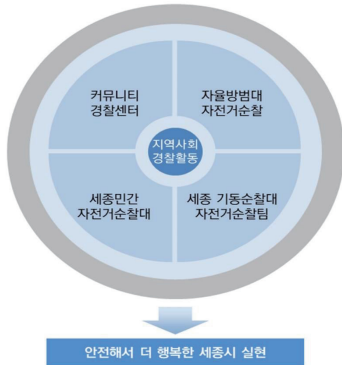
소요 인원 현황: 인력증원 없이 기존 인력으로 운영 가능

| 구분 | 현인원 | 광역경찰대응단 | 커뮤니티경찰센터 | 비고 |
|----|-----|---------|----------|------|
| 계 | 132 | 112 | 20 | 대비 0 |

커뮤니티경찰센터와 연계한 자전거 중심의 지역사회경찰활동

4. 광역경찰대응단 및 커뮤니티경찰센터 제언

세종 자전거 중심 지역사회경찰활동



- 세종시에서 전국최초 자전거 순찰대 발족
-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세종경찰청, 세종시의회의 협력으로 인한 성과
- 2024. 2. 26. 세종청 기동순찰대(5개팀 29명) 중, 1개팀(6명)을 자전거 순찰팀으로 창설
- ※ 자이언트 익스플로어 전기 자전거 6대 구입, 트레일러 1대 제작(자전거 거치대 8대, 원거리 이동용)

<성과>

- 학생 P.M 등 안전교육 안전으로 자경위 실무협의회 통해 교육청과 3회 실무협의 → 신청 학교에 자전거순찰요원 안전교육 실시 협의
- P.M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행위 단속(교통, 무면허, 무보험, 절도, 2인 이상 탑승 등, 현재까지 950건)
- 안전교육: 11개 학교 교육
- 하천길, 공원, 골목길 등 순찰차량 순찰 어려움 치안사각지대 순찰 다수
- 한국청력방송KTV인스타그램 870만뷰 돌파

S-A-R-A 모델을 통한 문제해결적 경찰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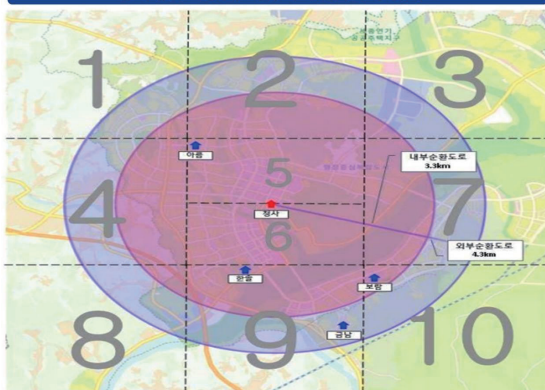


- 자전거 중심의 지역사회경찰활동 강화, 커뮤니티경찰센터 및 자율방범대에 전기자전거를 배치해 순찰 방법 다양화 (P.M 단속 및 지도에 효과)
- 주민접촉순찰을 통한 문제해결적 경찰활동 전개 가능

광역경찰대응단, 커뮤니티경찰센터 운영방안

4. 광역경찰대응단 및 커뮤니티경찰센터 제언

광역경찰대응단, 커뮤니티경찰센터 위치도



▲ 범례

- ▶ 광역경찰대응단 (청사지구대)
- ▶ 커뮤니티경찰센터 (금남파출소, 보람지구대, 아름지구대, 한솔지구대)
- ▶ 내부순환도로 (반원 10.3km) * 10.3km X 시속50km = 12.3분
- ▶ 외부순환도로 (반원 13.5km) * 13.5km X 시속70km = 11.5분

광역경찰대응단 및 커뮤니티경찰센터 운영방안 주요내용

| | |
|----------|--|
| 광역경찰대응단 | <p>집근성 (현장 도착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청사지구대(남부관할 중앙에 위치)를 광역경찰대응단으로 활용 ▶ 내부순환도로(BRT) 반원 기준 10.3km, 제한속도 50km/h 적용시 현장 도착시간 약 12.3분 소요 ▶ 외부순환도로 반원기준 13.5km, 제한속도 70km/h 적용시 현장도착시간 약 11.5분 소요 ▶ 실제 현장 도착시간은 위 사진 권역별 구역 1번~10번 내에 거주 순찰중인 112순찰 차량이 현장 도착 하므로 5분 이내 현장 도착 증분 ※ 경찰긴급차량 112 긴급출동시, 속도제한 면책 규정 있음 |
| 근무 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구역 지정(치안수요 분석, 권역지정(외 예시 1번~10번)) 순찰차량 10대를 권역별 책임지역 지정, 책임지역 내 차량거점 순찰 및 112신고 출동 ex) 2번 지역 순찰차량 신고 처리시, 외 인접 1,3,5 차량이 지원 또한 폭행, 집단 폭행 및 강력사건 발생시 모든 순찰차량 신속하게 동시지원 가능 |
| 커뮤니티경찰센터 | <p>공동체 치안 허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흥공간(2층)을 자율방범대, 고위험정신질환자 대응센터, 여성쉼터, 자살예방센터 등 활용 안전 및 보호 허브 공간으로 민드업! ▶ 가정 '우리마을 안심공동체' 결성, 치안소식 공유, 안전사업 발굴 주민자치회 월례회 상근 위원으로 참석 공문화 ▶ 커뮤니티경찰센터, 자율방범대 자전거순찰팀, 민간 자전거 순찰대 합동 자전거순찰팀 구성 자전거 중심 커뮤니티 풀리싱 구현! <p>문제해결적 경찰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R-A모델 근거 주민접촉을 통해 「문제해결적 경찰활동」으로 지속적·반복적인 고질적 원인을 찾아, 문제 해결 <p>소통 홍보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안소식지 공유, 범죄예방교실 운영, 자율방범대 교육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기 예방 교육, 범죄 및 예방관련 민원 상담 소통 |

자치경찰 이원화를 전제로 하였을 때 법제화는 **경찰법 개정(안)** vs **세종시법 개정(안)**의 두가지 방식이 가능할 것임

| 경찰법 개정(안) 일부 | | 세종시법 개정(안) 일부 | |
|--------------|--|---------------|--|
| <원 행> | <개정안> | <원 행> | <개정안> |
| <신 설> | <p>제00조(자치경찰의 조직 및 정원) ① 자치경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관리하 자치경찰본부를 둔다.</p> <p>② 자치경찰본부장 소속으로 시, 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자치경찰단(이하 "시·군·구 자치경찰대"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시·군·구의 치안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일부 시·군·구를 통합 관할하여 관할하는 자치경찰단을 둘 수 있다.</p> <p>③ 시·도의 광역적 자치경찰사무를 직접 집행하기 위하여 자치경찰본부장 직속으로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p> <p>④ 자치경찰본부의 조직 및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p> <p>제00조(자치경찰본부장) ① 자치경찰본부에 자치경찰본부장을 두며, 자치경찰본부장은 관할구역의 자치경찰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p> <p>② 자치경찰본부장은 자치치안장관, 자치치안감 또는 자치경무관으로 보한다. 이 경우 자치경찰본부장을 해당 자치경찰본부 외부에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p> <p>--각호 이하 생략--</p> <p>제00조(자치경찰단장) ① 시·군·구 자치경찰단에 자치경찰단장을 두며, 자치경찰본부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제00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p> <p>②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무관, 자치중경 또는 자치경정으로 보한다.</p> <p>③ 자치경찰단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그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 또는 단장은 치안수요, 교통, 지리 등을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지구대 및 파출소를 광역경찰대응단, 커뮤니티경찰센터로 개편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p> | <신 설> | <p>제00조(자치경찰의 조직 및 정원) ① 자치경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관리하 자치경찰본부를 둔다.</p> <p>② 자치경찰본부장 소속으로 세종시 남북부 관할구역으로 하는 자치경찰단을 둔다.</p> <p>③ 세종시의 광역적 자치경찰사무를 직접 집행하기 위하여 자치경찰본부장 직속으로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p> <p>④ 자치경찰본부의 조직 및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p> <p>제00조(자치경찰본부장) ① 자치경찰본부에 자치경찰본부장을 두며, 자치경찰본부장은 관할구역의 자치경찰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p> <p>② 자치경찰본부장은 자치치안장관, 자치치안감 또는 자치경무관으로 보한다. 이 경우 자치경찰본부장을 해당 자치경찰본부 외부에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p> <p>--각호 이하 생략--</p> <p>제00조(자치경찰단장) ① 세종시 남북부 경찰관할 구역에 각각 자치경찰단과 자치경찰단장을 둘 수 있다. 자치경찰단은 자치경찰본부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제00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p> <p>②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무관으로 보한다.</p> <p>③ 자치경찰단장은 경찰법 제30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치안수요, 교통, 지리 등을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지구대 및 파출소를 광역경찰대응단, 커뮤니티경찰센터로 각기 분리·개편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p> |

자치경찰 이원화로 인한 실현이 어렵더라도 현재의 "자치경찰 일원화 방식으로도 운영"이 가능함

현 제도안에서 커뮤니티경찰센터와 광역경찰대응센터(세종남부서 관할)를 분리 개편해 '공동체 치안 활동의 새로운 모델'로 운영 가능

즉, 시범적으로 현재 자치경찰제도 안에서 실험한 뒤, 제도가 안착하고 자치경찰제 이원화가 본격화 될 때, 본 연구자가 제안한 방식으로 세종형 자치경찰 이원화 모형을 제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현재, 국유재산법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상황임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관한 법률
- ※ 박정현 국회의원 대표발의(24. 7. 18.)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공유 재산을 활용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 신설

아울러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유재산특례법'이 통과된다면 운영상 용이성이 클 것임



본 발표는 김흥주 · 홍성표 외(2024) 연구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보완 · 정리하였음을 밝힘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제 1 주제

토론문

토론문

김영식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위원

□ 112치안종합상황실 이관의 문제점

- 이원화 개편안에 따르면 세종시 자치경찰 지위감독 체계에서 112신고 공동대응을 제시하고 있고, 국가경찰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및 광역대응단과 자치경찰본부장 산하 커뮤니티경찰센터가 112신고에 대응하는 시스템임
- 그러나 커뮤니티경찰센터는 112신고대응을 주요 임무로 하는 조직이 아니고 지역사회경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으로 제시되어 있어 112치안종합상황실 이관은 설득력이 없음
- 또한, 자치경찰 이원화를 통해 지역경찰조직(지구대·파출소)이 이관된다 하더라도 지역경찰관서의 경우 국가경찰사무와 국가·자치 중첩·연계사무를 담당하고 있고, 국가경찰 소속 112대응조직을 별도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112치안종합상황실 이관은 세종형 자치경찰 모형 도출을 위한 전제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됨
- 한편, 112치안상황실, 119종합상황실, 통합정보센터, 재난안전상황실을 통합하여 '시민안전통합상황실'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각 기능별 전문성과 근거 법령의 상이함, 기구별 후속 조치 및 연계 기관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낮다고 생각됨

□ 자치경찰 초동조치권에 대한 의견

- 초동조치권이라는 별도의 법적 권한을 예정하고 근거규정 신설을 제안하고 있으나 초동조치권이라는 별도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직법, 형사소송법, 도로교통법 등 수권규정에 근거하여 현장경찰관이 현장상황에 따라 경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됨
- 자치경찰 이원화 이후 지방공무원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이 임명된다면 현행 제주자치경찰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권한 주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권규정의 개정을 검토할 수 있음.

□ 자치경찰인력 조정 및 이관 검토에 대한 의견

- 자치경찰 조직 및 인력 이관은 자치경찰 사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무를 수행하는 현장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제시된 인력 조정은 112·119 종합상황실, 통합정보센터, 재난상황실 인력이 90명 이관인력으로 산정되어 있어,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현장인력에 대한 고려 없이 산술적 이관인력을 도출하고 있음.
- 이원화를 고려한다면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인력과 현행 자치경찰사무수행 국가경찰공무원 인력 이관을 전제로 이관 인력규모 산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자치경찰 주요사무, 자원 및 시설, 인사권 및 인센티브 검토에 대한 의견

- 제시된 사무 내용을 보면 세종자치경찰의 주임무는 시민안전통합상황실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자치경찰은 근본적으로 범죄예방, 지역안전 확보 등 행정경찰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대응이나 진압 중심이 경찰활동이 아님.
- 커뮤니티경찰센터를 통해 공동체 치안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안전 영역에서의 ‘공공가치의 공동창출’을 도모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실제 연구 내용은 전면에 내세운 방향성과는 역행하는 방식으로 보여 지고 있어 조직 설계와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자치경찰제 추진 배경과 세종형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 방안

김현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1. 자치경찰제는 왜 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라는 제도는 1961년 5.16 쿠데타로 중단된 후, 1991년부터 본격 실시되었다.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후부터 오랜 기간 중앙집권제가 유지되어 지방자치에 익숙하지 않은 실정에서 지난 2021년에 도입한 자치경찰제도는 기존 국가경찰제도와 비교하여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주민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제도 도입 목적인 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조직·인사·예산·운영 등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제도임에도 시행 역사가 짧아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제도적 개선을 통해 자치경찰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방안이 될 것이다.

2.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 광역시도는 자치경찰제도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현 정부는 제주, 강원, 전북, 세종 등 전국 4개 지역에 2024년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를 예고했으나 추진 실적은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관련 법령이나 사업을 뒷받침할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치경찰 이원화는 물론이고 현재 자치경찰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법령이나 제도적 문제점으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경찰사무를 규정하지 않았고 개별법인 경찰법에서도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적으로 현행 자치경찰사무를 자치사무로 보기 어렵고 위임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학계의 의견이 다수임)

둘째,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지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도지사는 1명만 지명, 인사권에 있어서도 경위 및 경감으로 승진임용권만 있다. 자치경찰 사무에 관해서도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하고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위원회나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법령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지자체가 권한은 없으면서 예산만 부담한다는 불만 팽배)

셋째, 지방의회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통제할 수 있으나 내밀하게 살펴보면, 지방의회는 자치경찰사무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예산이 수반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사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

(자치경찰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가 아닌 사안별 감사가 될 수 있음)

3. 세종시 자치경찰제 이원화 추진 방안 제언

○ 지방자치법 개정 및 자치경찰법 제정 건의 추진

지방자치법에 자치경찰사무를 자치사무로 규정, 국가사무에서 분리. 지방의회법 추진 배경과 동일하게 국가경찰법과 자치경찰법으로 각각 분리하여 자치경찰사무 범위와 예산지원 절차, 조직, 인사 등에 관해 규정. 자치경찰 특별회계 도입으로 안정적 예산 확보

○ 치안, 소방, 재난, 생활안전, 학교 밖 청소년 활동 등 통합 상황실 운영

세종시가 스마트 도시를 구현하려는 목표에 맞게 안전, 재난, 소방 등에 치안 기능을 탑재하여 중복기능을 방지를 통한 저비용 고효율 통합상황실 운영

개별적, 사안별 시스템 구성이 아닌 통합적인 시스템 구성으로 인력운영 효율화

(예: 112+119상황실+도시통합관제시스템 등)

○ 장기적 관점에서 파출소, 지구대의 안정적인 자치경찰 사무로 이관

시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역할을 하는 파출소, 지구대를 자치경찰 업무로 이관을 추진하되 국가경찰과 업무 배분(신고, 출동, 사고처리 등), 역할, 업무에 대한 통제 방법 등을 제도화 한 후 이관 필요.

4. 맺음말

현재 자치경찰제도는 자치경찰사무 분권은 추진되고 있으나 주민자치성이 결여된 자치경찰제도이다. 이미 자치경찰제도를 추진할 당시부터 개문발차(開門發車)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더 늦기 전에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자치경찰제도를 “권력 지키기”나 “예산절감” 차원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경찰법을 비롯한 관계법령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예산의 안정적 지원 방안을 능동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 마련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 주민이 자치경찰 수장을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를 도입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추진하여 최종적으로 국가경찰을 최소화하고 자치경찰로 완전히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자치경찰 이원화 제도 성공적 추진 후 단층제인 세종시에 자치경찰 직선제를 시범 실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세종형 자치경찰 이원화 모형에 관하여

류제일 세종시 시민안전실장

자치경찰제는 경찰 사무중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치안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2021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에 있음. 자치경찰이 출범한지 4년이 지나고 있지만 현행 모델의 한계로 인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데에는 아쉬움도 많음 이를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가 안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당초의 취지에 맞게 국가 경찰과 분리가 필요하다는데 필요성은 있지만 책임과 권한이 일치된 실질적인 모델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경찰, 소방, 재난관리 등 다양한 기관의 역할을 통합하여 시민안전상황실, 광역경찰대응단, 커뮤니티경찰센터 등 기관을 재편함으로써 대응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점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세종형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이 광역사건 및 긴급대응을 담당하고 자치경찰이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역할을 분담하려함. 이를 통해 국가경찰은 광역적인 범죄와 긴급한 사안에 집중할 수 있으며, 자치경찰은 지역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기반으로 보다 세밀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긴급 상황에서 대응 지연이나 책임 회피 등 권한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범죄 발생 시 누가 주도권을 갖고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가 불명확할 경우, 치안 체계가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시민안전상황실 통합운영은 112와 119 긴급 신고 시스템을 통합하여 경찰, 소방, 재난관리 부서들이 신속하고 일원화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음. 이를 통해 다양한 위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와 자원 배치가 가능해져, 시민 안전을 위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가 구축됨. 범죄와 재난 상황을 함께 관리함으로써 범죄와 재난 예방 활동에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경찰, 소방, 재난 대응 부서가 모두 통합 운영될 경우, 각 부서의 지휘 체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음.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 어느 부서가 최종 결정을 내릴지 명확하지 않으면, 지휘 체계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장

대응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긴급 상황에서의 지휘 체계를 강화하여 혼선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세종형 자치경찰제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추가적인 인력 증원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 시민안전상황실 역시 통합 운영을 통해 중복된 자원을 줄이고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음. 이러한 효율화는 초기 도입 단계에서 중요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의 역할이 커짐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자치경찰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광역경찰대응단은 112신고에 대응하며 광역적인 범죄 예방과 순찰 활동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음. 이는 광역적인 범죄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여, 세종시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최적화된 대응을 가능하게 함.

한편, 커뮤니티경찰센터는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범죄 예방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자율방범대와 기동순찰팀을 지휘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치안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광역경찰대응단과 커뮤니티경찰센터가 모두 범죄 예방과 순찰 활동을 담당함에 따라, 이들 간의 역할 중복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어느 정도의 책임을 맡고 어디까지 관여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을 경우, 역할 분담이 불명확해질 수 있음.

따라서 광역적인 범죄와 지역 밀착형 치안 활동이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담당하는 지역과 사건 유형을 기준으로 역할을 나누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함.

이원화된 경찰 조직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범죄 예방 및 대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자치경찰이 주로 지역 단위 정보를 다루더라도 국가경찰과의 정보 연계가 부족하면 수사나 예방 활동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통합된 디지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하여 치안 상황을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음.

세종형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역할을 분명히 하여, 지역 특성에 맞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 중 하나이나 이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권한 중복, 정보 공유 문제, 지휘 체계 혼란 등을 사전에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명확한 역할 분담, 조직 간의 협력과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며, 재정적 지원과 인력 전문성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함.

토론문

이희택 중도일보 세종본부장

1. 세종시 출범 이후 특수성 감안, '경찰 조직' 확대 추세

- (1) 2012년 7월 출범 당시 조치원 '세종경찰서'로 치안 유지, 충남지방경찰청 지휘
- (2) 2019년 7월 세종경찰청, 민간 건축물 임대료 개칭
- (3) 2020년 10~11월 기동대 및 특공대 창설
- (4) 2021년 5월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 (5) 2021년 10월 남부경찰서 개서, 조치원 북부경찰서 개칭
- (6) 2024 기동순찰대 창설 : 자전거 순찰대 1팀 포함
- (7) 2026년 고운동 세종경찰특공대 개소
- (8) 2027년 하반기 합강동 세종경찰청 신청사 개칭
- (9) 청사 주변으로 '중부경찰서' 개칭 검토 중

==>점차 나아지고 있는 치안 여건, 여전히 경찰 1인당 인구수는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수준. 정부세종청사 주변으로 국내 여러 단체 집회/시위 급증.

2. 경찰과 언론 그리고 시민 사이 거리감

- (1) 세종경찰청 출범 이후 5년 간 공식 기자회견 사실상 '0건'
- (2) 전국 17개 시·도경찰청 중 유일하게 기자실과 브리핑룸 미보유
- (3) 도시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는 5대 범죄 발생 건수 등의 추이도 비공개 상황(충남경찰청 관할 당시에는 홈페이지에 수시 공개)
- (4) 세종시의 주요 3대 범죄 검거율은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 : 절도와 강간, 폭력 범죄 검거율은 2021년 전국적으로 각각 59.2%, 97.7%, 87.6%/ 상대적 비교 수치상 세종시의 2023년 수치는 41.1%, 81.6%, 79%로 저조/ 전국을 떠나 절도와 폭력 범죄 검거율은 2022년보다 더 하락(유인호 의원실 지적)
- (5) 음주운전 추이 관리, 극단적 선택 및 학교폭력 방지, 과속&난폭 운전 대응, 전동킥보드의 오용 및 사고 위험성 등 지역 안전망을 뒤흔드는 사회 문제에 대한 기관 간 칸막이 행정 여전 : 세종시, 시교육청 유기적 공조 부족하다는 평가

- (6) 피부에 와닿는 체감형 치안 활동 예시 : 음주 단속, 교차로 소통 관리
- (7) 안전도시, 살기 좋은 도시 1위란 타이틀에 숨겨진 도시의 어두운 단면에 대한 조명은 사실상 부재
- (8) 1년도 채 안 돼 바뀌는 세종경찰청장 인사 : 잠시 머무르는 정류장이 되면서, 책임감 있고 능동적인 치안 서비스 구현 노력 한계/ 지역에 대한 이해도 부족(초대 14개월, 11개월, 13개월, 14개월, 9개월, 2024년 8월 신임 청장 취임)

3. 지역사회 각종 안전망 협의 기구에서 빠져 있는 ‘언론’ 기능

- (1) 지역사회안전협의체(가)나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실무협의체 또는 정책지원단에는 ‘세종시와 교육청, 경찰청, 시의회, 대학’ 등 공공기관 중심의 참여
- (2) 살인/ 강도/ 강간 및 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 실종과 유괴, 방화, 음주운전/전동킥보드 불법 탑승/ 택배 차량의 주거지 과속 등 생활 안전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폭넓게 담아내는 데 한계
- (3) 안전도시, 살기좋은 도시 타이틀에 숨겨진 이면은 수면 아래로, “쉬쉬”하는 분위기가 여전한 가운데 도시 문제의 적극적, 능동적 해결은 물음표
- (4)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얼마든지 ‘언론 보도’의 수위 조절(보도 준칙 마련·시행)과 방향성을 논의할 수 있으나 언론 신뢰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잠재
- (5) 최근 이슈인 학교 현장의 ‘교권 보호’부터 ‘학교 폭력’, ‘고층 아파트 투신 증가’, ‘아동 학대’, ‘이상 동기 범죄 대응 시스템 취약’, ‘과속·난폭 운전’, ‘화재 대응’, ‘교통 지정체 증가’ 등 생활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도 잘 일어나지 않고 있음

4. 국가와 자치 경찰 일원화? 이원화? 시민들은 앞서 체감형 정책을 원한다!

- (1)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언론부터 시민사회까지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
- (2)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로 이원화 필요성을 체감하기까지 보다 많은 노력 필요, 공감대 확산이 빠른 제도 안착의 해법이기 때문
- (3) 자치경찰제의 초점은 철저히 시민 중심의 체감형 치안서비스 실현에 맞춰야 함, 일상생활의 불편 요소 해소도 중요한 가치(내 곁에 세종경찰 캐치프레이즈 이상이 현실이 되어 함)

5. 자치경찰제 이원화까지 과도기 상황에 드리는 제안

(1) 국가경찰 조직의 안정화가 우선, 언론을 매개로 한 시민사회와 ‘소통 채널과 루트’ 강화 필요 : 협의체 참여 유도과 정례 기자회견 필요

(2) CCTV 지능형 관제 기능 보완(현재 18%만 가능)과 도시통합정보센터 전면 업그레이드(교차로 신호 관제 불가능, 상황판 35%가 고장 등 기본 인프라 보완 필요

(3) 중부경찰서 건립 가시화 숙제, 공동 대응

(4) 세종경찰청 신청사 시대(2027년), 대통령 집무실(2027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1년), 세종법원·검찰청 신설(2031년) 흐름 아래 지역을 넘어 국가 보안과 중요시설 안전망 구축도 중장기 과제로 부각

(5) 합강동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사업과 연계, 세종경찰청 신청사를 중심으로 시와 드론 등의 첨단 기술 접목 확대 유도

(6) 1개 읍, 9개 면, 14개 동별 순차적으로 건립되고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여유 공간을 ‘커뮤니티경찰센터’로 활용/ 읍면동 사무소와 학교, 이·면장, 자율방범대, 자전거 순찰대, 의용소방대, 녹색어머니회, 청년회 등 다양한 단체와 연계 시너지 효과 유도

-커뮤니티경찰센터 기능 : 범죄 예방 대응/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성폭력 및 학교폭력) 사무 초점

-기존 지구대와 파출소, 치안센터는 당분간 국가경찰(정보·보안·외사·경비, 범죄 수사 기능) 소속으로 현행 유지

==지구대 : 조치원/아름/한솔/청사/보람 등 모두 5곳

==파출소 : 전의/부강/전동/연동/금남 등 모두 5곳

==치안센터 : 소정/연서/장군 등 모두 3곳

(7) 과도기적 상황에서 자치경찰 활동에 대한 시민 체감도 향상도를 크게 높인 뒤, 이원화 대안을 차례로 모색해 실행

(8) 지역사회에 접목해볼 만한 ‘서비스’ 아이디어

-세종시티앱(1만 명 이상 다운, 소통 채널)과 세종엔(2022년 4월 출시, 1만 명 이상 다운, 정보 채널) 활용,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수렴부터 신고 및 위험 상황 전파 확대 필요

==현재 세종엔에는 ‘안심이’란이 있어 1.5km 이내 가까운 경찰관서 찾기와 위험 상황 사진 촬영 신고 가능

-축제와 공연 이벤트 행사 등 다중 운집 행사 안전 대응 시스템 강화 : ‘지/정체 구간’과 ‘유동인구 혼잡도’, ‘지역 내 주요 주차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동, 구축

-드론 수색을 일상 속으로(CCTV 사각지대 보완 기능) : 현재는 실종 등 특별한 상화에서만 가동/ 경찰 조직에 드론 수색대 없음/ 일상을 위협하는 멧돼지 출몰 및 포획, 도심 내 난폭 운전, 킥보드 및 오토바이 불법 운전, 이상 동기 범죄

세종형자치경찰 이원화 모형에 대한 발전방안 제언

장일식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 부원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뜻깊은 자리에 초대받아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함께 고견을 나눌 수 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6년 차 현직 경찰관으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서 근무 중, 2020년부터 자치경찰 관련 연구에 집중하여 현재까지 자치경찰 세미나 발제 18회, 자치경찰 교육, 사회적 약자 협업 방안 등 3년간 시리즈로 책임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2022년 2월에 경찰대학과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MOU를 맺어 학술적인 교류도 지속해 왔을 뿐만 아니라 공동 학술세미나도 개최하여 세종자치경찰에 관해 심층 연구를 누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세미나를 많이 개최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자치경찰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큰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제안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를 마쳤습니다. 제가 그동안 세종자치경찰을 연구하면서 느낀 점은 세종시민들의 성숙도와 치안과 안전 정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었습니다. '세종이면 시민지향적인 치안 시책을 추진해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하는 확신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제자이신 김흥주 책임연구위원은 행정학을 기본으로 세종주민자치회등 실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많은 연구를 해 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연구 결과가 더욱 가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더욱더 연구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추가로 첨언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시점은 이원화의 구체적인 논의와 변화보다는,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경찰청(치안 사무)과 자경위(자치경찰사무)가 상호 협력·발전할 수 있도록 치안의 공동생산자 관계 형성하면서 협력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은 세종형 자치경찰방안을 고민해 왔고, 그 연구 결과 중 일부를 발제한 것 같습니다.

발제자가 연구한 결과 중 세종지역은 시내권 중심의 행정타운에서 집중적으로 광역경찰대응단이 신고출동에 집중하고, 이외 다른 지구대 건물을 활용하여 커뮤니티경찰센터로 활용하자는 안입니다. 주요 거점 지역에서 대기하다 출동하면 기존보다 112신고 대응에 더 적극적이고, 치안 수요가 비교적 일정한 곳이기에 시범 운영으로 적합해 보입니다. 즉, 4개의 유휴 지구대 청사를 경찰센터로 하고, 2층을 자율방범대, 주민자치회, 시민 경찰 등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고, 임시 여성 안전 쉼터나 자살 예방 상담 시설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범죄예방 분야는 자치경찰이 담당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세종경찰청 신축은 물론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 입주까지 고려한다면 세종은 세종중부경찰서가 신설되어야 할 행정적·전략적 요충지역입니다. 그렇기에 각 지구대, 파출소에서 출동하는 기존 방식에서 변화를 주고, 기존 지구대를

시민들과 공유공간으로 활용해 보자는 취지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시민들은 대부분 지구대에 각종 신고로 방문하는데, 함께 공유하는 공간에 가서 소통의 시간을 갖고, 현재 복지행정의 최접점인 각 센터가 있으나 야간 시간대는 인력이 없거나 부족하여 조치가 신속하게 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커뮤니티경찰센터 근무자들은 실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접촉하고, 실생활 속에서 안전(이동형 PM 위험성 홍보, 청소년 비행 예방, 자율방범대와 긴밀한 연대, 주민자치회와 안전에 대한 의견 수렴, 전화 금융사기 예방, 교통 홍보와 차량 정체에 대한 아이디어 수렴 등) 활동에 전념하여 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자치경찰 이원화의 다른 모형을 선택하거나 시범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세종만이라도 이러한 선택과 시도를 한다면 특히 시민들의 생생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 분야에서 현재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자살시도자, 정신질환자 관리를 세종특별자치시와 NGO와 협업하면서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과 경찰의 수용성이 낮은 상태에서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와 시도는 공동체 치안의 지향점은 '시민'의 목소리에 경청하게 될 것이며, 세종시민들도 그동안 외부에서 단순히 바라봤던 시각에서, 치안의 실체를 보고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 치안 공공재를 생산자는 파트너로 발전해 나간다면 다른 지역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발전할 것입니다.

세종은 전국에서 30대 여성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지역이며, 이에 따라 자녀들도 전학을 오고 있고, 집값 변동과 세종에 정착하는데 다양한 갈등도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세종의 특수성까지 고려하면서 전입 초기 경찰은 물론 시민협력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얻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체감치안 향상은 물론 심리적·정서적 안정까지 줄 때 경찰에 대한 신뢰도 향상될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민들이 진정한 주인이고, 세종자치경찰관들도 세종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더욱 친밀하게 소통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 자치경찰은 성큼 다가올 겁니다.

세종자치경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추후 세미나 개최로 더욱 활발한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론문

차인호 세종북부경찰서 전의파출소장

I. 들어가며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 남택화 위원장님, 김정한 국장님, 발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김흥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종형 자치경찰 이원화 모형 도출(안)은 제주형 불완전한 이원화 모형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① 자치경찰 초동조치권(초동조치권, 초동수사권 포함)부여, ② 시민안전통합상황실 재편, ③ 과태료, 범칙금 이관을 통한 자원 확충(자치경찰교부세 신설), ④ 직급일원화, 계급정년제 폐지 등 많은 개선안이 포함되어 있어 세종시민과 현장 경찰관들을 위한 배려의 결과물이라 생각되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범죄예방 기능이 주 업무로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대응과 및 지역경찰(지구대, 파출소)이 자치경찰로 완전히 이관되지 못한 점은(불명확)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II. 광역경찰대응단 및 커뮤니티경찰센터 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안 공급 인력의 총량증가 없이(순증 없는)현장대응경찰관(순찰팀)을 감축하여(-19명)실효성에 의문이 있는(주간만 근무)커뮤니티경찰센터 안의 문제점으로

- ① 112신고 출동 등 대응약화(인력·순찰차 감소, 연·병가, 대기자로 인한 대응인력 감소)
- ② 대응단 및 커뮤니티 경찰센터 상호 간 불신 및 갈등 상황 발생(초기 제주형 사례)
- ③ 자방대 야간활동(대응단에 업무 전가),
- ④ 여성쉼터, 정신질환자합동대응센터는 주간보다 야간 및 휴일에 필요 실효성에 의문,
- ⑤ 기순대 창설 후 현장에서는 신고 출동을 하지 않는 것에 가장 큰 불만 표시 제2의 기순대 창설로 인식
- ⑥ 대응단 야간 대기, 현행범인 체포시 등 장소협소, 피의자 관리 등에 문제점 있고, 근무여건 악화로 사기 저하

III. 대안

커뮤니티 경찰센터, 범예과, 지역경찰을 자경위 소속으로 완전 이관 여성쉼터 등 연계기관과 협업하여 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하고, 전직 직원 등 채용하여 인력 순증을 통한 실효성 제고.

감사합니다.

세종형 자치경찰 이원화 모형, 공동체 치안 활동의 새 기준 제시

홍나영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1. 세종형 자치경찰 이원화 모형에 대한 제언

- 안녕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나영 의원입니다.
- 2024년 2월 2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국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세종시는 교통사고와 생활안전 분야에서 5등급, 화재와 자살 분야에서 각각 3등급과 2등급으로 하락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지역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세종시는 급격한 도시 성장과 함께 치안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번 평가 결과는 이러한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교통사고 예방, 생활안전 강화, 화재 대응력 제고, 자살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세종시와 관련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 세종시는 행정중심지로서 국가 주요 기관들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국가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자치경찰은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밀착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는 이원화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형은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자치경찰은 지역 특성에 맞춘 민생치안에 중점을 두고, 국가경찰은 보다 큰 범죄와 질서유지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이는 세종시민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특히, 세종형 자치경찰 이원화 모형 즉, '시민안전통합상황실' 및 커뮤니티경찰센터 재편과 광역경찰대응단은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자치경찰은 지역주민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으며, 이는 치안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나 범죄 취약지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 또한, 세종시는 현재 기초지자체가 없는 광역지자체로서 자치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치경찰이 세종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을 펼칠 수 있다면, 시민들의 체감 안전도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자치경찰이 단순한 치안 제공자가 아닌, 시민과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세종형 자치경찰 이원화 모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첫째,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요합니다. 자치경찰은 지역주민의 치안 요구에 더욱 긴밀히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자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둘째,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두 기관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로서, 자치경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타 지자체에도 모범적인 사례로서 벤치마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치경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때입니다.

○ 김흥주 책임연구위원님께서 제시한 세종형 자치경찰 이원화 모형은 세종시의 치안 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안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어 협력하는 이 모델은 세종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광역경찰대응단과 커뮤니티경찰센터를 통한 공동체 치안 활동은 세종시가 전국적인 자치경찰 모델로 자리 잡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2. 자치경찰제의 발전을 위한 입법적 개선 과제

○ 2020년 12월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1년 7월 1일 전국 17개 시·도에 전면 시행되었으며, 마침내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숙원과제인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가 도입 및 시행됨으로써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적합한 지역 치안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어느덧 자치경찰제 도입 3년째를 맞이했습니다.

○ 그러나 여전히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어, 국가경찰의 수행 업무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담당 경찰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수준입니다. 또한, 지휘·감독권, 인사권, 예산 편성권 등 원활한 조직 운영에 필수적인 권한 대부분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무늬만 자치경찰’, ‘자치경찰 없는 자치경찰제’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특히, 자치경찰제의 본래 목적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에 있으나, 이를 위한 안정적인 자원 확보 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완전한 이원화’를 국정과제로 발표하고, 올해부터 전국 4개 지역에서 시범실시하기로 한 이원화 자치경찰제 역시 아직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나오지 않아,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의문시되는 상황입니다.

○ 자치경찰제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주민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하지만 현 자치경찰제는 인력, 예산 등 시행 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것이 거의 없어, 주민들이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따라서 자치경찰의 온전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조직과 인력에 대한 권한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온전히 부여하고, ▲자치경찰의 인사권과 예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또한, 교통 범칙금·과태료 등 자치경찰 사무로 발생하는 세수를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원활한 지역 안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인 「경찰법」, 「지방교부세법」 등을 개정하여 ‘자치경찰 특별교부세’를 신설하는 등 예산 확보 및 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 특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지휘관계 설정, 인사 운영방안, 기능과 권한의 분리 등의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하루빨리 제시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완전한 이원화’를 명시하고 있는 국정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에 세종시의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하여 자치경찰제가 지역 실정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을 중심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안전 사무 등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제도의 취지대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건설적인 의견들이 진정한 시민을 위한 자치경찰제도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제 2 주제

발 제 2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한
법적 쟁점

이기춘 부산대학교 교수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한 법적 쟁점들

이기춘 부산대학교 교수

09.30. 자치경찰제 세미나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한 법적 쟁점들

발제자 : 이기춘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행정법, 경찰법, 환경법, 재난법

프롤로그 – 경찰법상 기초개념들

- 경찰법상 '경찰' 개념
 - 실질적 의미의 경찰
: 보호법익(공공의 안녕질서)/대상(구체적 위험)/목적(예방, 대응, 진압) 중심개념
 - 제도적/조직적 의미의 경찰
: 국가/지자체, 경찰청/소방청 등 주체/기관 중심개념
 - 형식적 의미의 경찰
: 위 제도적/조직적 의미의 경찰이 수행하는 경찰활동으로서 (형사)사법경찰(범죄 수사, 체포 등), 행정경찰(현 경찰청의 집회, 행사안전, 교통질서확보 등) 포괄 개념
 - 일반경찰법학자들은 전자의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을 중시함(판례에서 말하는 '경찰 허가'에서 '경찰'의 의미). 그러나 경찰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에게는 후자 개념 중심
- 20세기 탈경찰화 경향
 -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개념 : 경찰행정과 질서행정(특히 지자체행정의 개입·간섭 (Eingriff)행정으로 규제)
- (형사)사법경찰과 행정경찰. 일반경찰법학자들은 후자 중요시

2

현행 이른바 일원제 시스템에 대한 평가

○ 자치경찰제도의 구현이 맞는지?

- 재정자립도 문제에 따른 지역편차/불균형이 예상되어 불가피한 과도기적 제도로 도입.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것 부인 못함.

○ 그러면 현재 3년이 된 지금의 자치경찰에 대한 평가는?

- 사무이양으로 인한 지자체 재정부담의 증가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저항 예상, 교부세, 자치경찰교부세 등 재정책보책은 국가의 재정소극주의에 가로막힐 가능성도 있는 것도 부인 못함. 행정경찰작용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부족으로 인지도, 이해도, 신뢰도 등 모두 예상한 만큼 증가하지 못함. / 지자체사무 특히 특사경업무와 중복된다는 보고.

- 그러나 주목할 만한 문헌에서 볼 수 있듯이 각종 자치안전(아동/청소년/노령인구 안전, 지역특수성 반영 안전) 정책개발

- 범죄예방, 교통질서, 생활안전에 대한 예방적 계도활동 등에 관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아이디어, 의견개진과 정책반영으로 신뢰도제고 중이라고 자평

분명히 과거 국가경찰만의 조직에서보다 창의적 행정경찰정책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은 분명함. 76년 경찰사에 획기적.

3

현 일원제를 대체하는 이른바 이원제 시스템에 관한 기존 경찰행정정책적 논거들 SWOT 분석

강점(Strength)

1. 지방분권사상가, 지방자치법학자들에 의해 주장되는 최고의 논거인 보충성원칙과 조화
2. 자치사무적 성격에 부합
3. 주민의 민주소양 · 자경의식 제고
4. 기존 협의의 행정경찰 · 특사경과의 중복 문제 감소

4

약점(Weakness)

1. 기존 국가경찰에 의한 안전 안정성 확보 수준 미흡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적인 주관적 우려 자체. 특히 위험상황에 기존 국가경찰의 기동성을 따라갈 수 있을지 의문
2. 초동수사권 도입전제, 범죄예방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수사, 체포 등 수준미달
3. 자치경찰제와 지방자치법상 보충성원칙의 상관관계 불이해
4. 공무원 복지, 근무사기 저하, 소방공무원 사례

5

기회(Opportunity)

1. 노령, 환경, 위생등 지역 고유의 위해대처 정책 개발을 통한 생활안전 수준 제고로 주민소멸 위기 타파책
2. 사법경찰활동에 익숙해진 주민들에게 행정경찰 활동의 강화와 시민의 생활안전 수준제고 · 의식향상
3. 일반행정법상 행정강제에서 행정단속, 행정조사, 행정강제 특히 즉시강제로서 즉시대집행 등 행정집행에서 과거부터 여전히 다루어 온 **집행부전**(Vollzugsdefizite) 문제 감소로 법치행정원리의 궁극적 실현. 이는 물론 기존 법률안으로는 불가능

6

현 일원제를 대체하는 이른바 이원제 시스템에 관한 기존 경찰행정정책적 논거들 SWOT 분석

우려(Threats)

1. 재정확보의 문제. 국비보조의 한계,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의 안전 수준 담보의 어려움과 격차해소 이를 위해선 **헌법적 명분/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 헌법조항으로는 이에 의문. 경찰행정학에서 한계가 있고, 공법학에선 이에 관심 미흡
2. 부패, 지역유지 유착 우려로 컴플라이언스적 대안필요
3. 신규 채용 자치경찰공무원의 수준/능력 저하
4. 특별한 근거와 능력이 없는 지자체의 행정권 확대 및 그것을 부추기는 일부 학계 구성원들과 자칭 전문가들의 위험성
5. 전국적 통일취급사례 집적이 필요한 재량영역에 부담. 지역간 합리적 사유 없는 차별적 공권력행사에 주민들 신뢰 저하
6. 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위/성과의 실질적 유지 신뢰 못함

7

(이원제적) 자치경찰제. 개별의문들

- 주민들은 자치경찰을 원하는가? 자치경찰에 의한 생활안전·예방을 위하여 기꺼이 세금을 별도로 내줄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내 안전에 다른 시·도와 차별이 발생함에는 어떻게?
→ 주민의 안전권(Grundrecht auf Sicherheit)과 대가론
- 자치경찰제의 헌법적 근거는? 국가의 공권력독점원칙(Gewaltmonopol),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서 '국가'에 '지자체'를 포함시켜볼 근거가 헌법에서 발견되는가? 국가와 지자체간 현대적 권력분립과 협력의 원칙?
→ 자치경찰제의 헌법적 근거론

8

(이원제적) 자치경찰제. 개별의문들

- 전가의 보도처럼 주장되는 지방자치법상 보충성원칙과 이 자치경찰제도의 근본적 상관관계가 인정되는가?

→ 보충성원칙의 한계론

- 자치경찰제도는 경찰법상 지도원칙 특히 경찰작용법에서 제1원칙인 효과적 위험방지원리(Prinzip der effektiven Gefahrenabwehr)에 부합하는가?

→ 그러나 자치경찰은 리스크사전배려(Risikovorsorge)를 위한 생활 안전 개입이 주된 목표라면? 구체적 위해제거는 국가경찰로

9

국가공권력 독점의 원칙(이성용)의 현대적 이해

독일 경찰법의 역사

- 동북부 프로이센과 남부 바이에른, 뷔르템베르크는 경찰법 역사가 다름.
통합주의와 분리주의. 현재는 통합경찰법모델초안(MEPoIG)으로 각 주마다의 특별성 자제. 그리고 주목할 점은 지휘부와 집행부를 나누는 분리시스템(Trennsystem).
주, 집행기관이 같은 우리와 국가경찰과 유사한 일원제형시스템(Einheitssystem) 주들의 공존임. 우리의 자치경찰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으로 인해 완전 일원제형인 국가경찰과 달리 (아직 지위정립이 무르익지 않은 불완전한) 분리시스템임. 단 범죄수사에 있어서 경찰기관인 검찰과 국가경찰의 관계는 역시 크게 봐서 우리 식의 분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음
- 이 분리시스템의 근거는? 집행공권력의 경찰국가적 행사에 대한 우려
그 견제와 균형, 권력분립원리와 다를 바 없음

10

공권력 행정조직법의 원칙과 자치경찰제

1. 효과성원칙
2. 분권/분산의 원칙
3. 협동의 원칙
4. 지휘/종속관계의 원칙
5. 조정의 원칙
6. 기동성원칙
7. 긴급관할권(여력상비의) 원칙

11

이원제적 자치경찰제 쟁점에 대한 결론

- 위해방지적 경찰법치국가원리에 근거했던 20세기적 구 국가경찰소극원칙은 자치경찰 시대에 있어서 현대적·사전예방적 적극원칙으로 변용됨
 - 그 헌법적 근거는 이제 '**사회국가원리**'로 교체됨

안전 특히 풀뿌리 안전은 국가, 국민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지자체 주민과 그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 생존배려의 최소조건임

- 국민을 종속체로, 권력의 객체로 보는 구 치안개념사상·관헌주의적 경찰법에서 **국민·주민**이 독립한 인권주체이자 공공안전을 위한 헌법상 기본 의무로서 **협력의무의 주체**로 보는 경찰법, 자치경찰법으로 진화해야 함

이것이 현대적 범죄예방국가론이 되어야 하고, 협력적 법치국가가 되는 것임.
이러한 논의는 지방자치법상 보충성원칙과 맞물려 오히려 자치경찰법의 기본원리로 더 중요함

이원제적 자치경찰제 쟁점에 대한 결론

- 20세기 초중반 경찰재량과 그 **편의주의론**에서 그 후반 자의적 행정작위 회피를 위한 **행정개입청구권** 법리발전 및 **무관용경찰전략**으로 발전,
- 여기서 더 나아가 **공권력·경찰편의주의적 재량행사에서 합리적 관용 및 사랑의 원칙**으로 발전. 이걸 구현하는게 자치경찰법의 보충성 원칙의 근거가 될 것임

안전 특히 풀뿌리 안전은 국가, 국민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지자체 주민과 그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 생존배려의 최소조건임.
 그러나, 예로, 시도 핵심위사건들을 보면, 합리적 재량권행사를 스스로 단념하고 국가법령에
 의존해버리는 사례들, 행정권 발동을 검사의 범죄판단에 의존해버리는 사례들을 볼 때
 더 확대된 사무집행의 자치경찰도입에는 의문임

현 지자체 법령의존성/검찰의존성

13

이원제적 자치경찰제 쟁점에 대한 결론

- 예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5항 위임의 시행규칙 별표23 등 재량준칙 관련 **재량권의 자의적 행사 방지를 위해 전국적 통일준칙성** 필요

지자체 질서행정 사무를 자치경찰사무에서 배제하는 현 경찰법의 개정이 전제되는 문제.

- 단, 지자체장이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법규명령 형식이라도 행정규칙에 불과한 재량준칙에의 종속과 **행정심판위원회에 재량권 행사를 이양**해버리는 현상을 보면, '자치'경찰이 과연 자율성을 유지할지 의문임
- 협력의 원칙, **위원회 제도의 현실적 미성숙** 위험. 부당한 독립성 침해 인사나 압박에 취약할 우려
- 지방자치법상 **자치경찰사무의 성격** 견해대립. 기관위임사무설(조성규)vs.단체위임사무 성격이 가미된 자치사무설(박병욱·이상훈)
- 주민소멸 대응 미성숙과 재정격차로 **지자체들 문제강화**
- 즉, 위 **자치경찰권 강화의 근거 찾기**와 **재정안정성**이 문제해결책
- 공무원법. 자치경찰 공무원의 근로복지측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돌아간 **소방공무원** 비교 필요. 이주민 대책과 자치경찰. 스웨덴 난민이주 후 최근 위기 사례

14

- 공권력 행사를 통한 **개입행정의 집행권한을 자치경찰에게로 이관**하여 국가법령과 검찰에 의존하는 현상부터 지워야 올바른 자치경찰제도가 자리매김될 것이라고 생각함
- 자치경찰제도의 헌법적 근거로 **사회국가원리, 안전배려적 법치·사회국가론**에서 찾을 노력을 공법학계가 경주해야 함
- 세종시와 같이 스마트한 현대적 자치경찰 구현할 수 있는 적지가 더 없다고 생각함. **ESG시대, AI시대, 기후변화의 시대**에 구태의연한 자치경찰론, 자치경찰법론을 따를 생각하지 말고, 현재 세종시 자치행정의 한계를 직시하고 긴 시간을 보고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윤리경영의 **컴플라이언스적**, 약자배려 등 사후배려강조하는 **리질리언스적 위해리스크예방행정도시**로! 이를 통해 세종시의 고유한 자치행정경찰, 위해예방을 위한 질서행정론 정립의 계기로 삼아야 함

자치경찰활동 관련된 각종 손실에 대하여 보상조례 도입 제안

15

- **3년의 자치경찰위원회 도입 성과가 절대 작은 것이 아님.** 행정경찰로 세종시의 스마트한 도입을 이끌어낼 수 있음. 따라서 과도기적 현 일원제의 약 10년간 유지를 주장하며, 대신 세종시의 이원제적 자치 행정경찰제 고안으로, 향후 100년의 한국 최고 **스마트복합 안전행정 도시**로의 발전을 기대함.

16

안전(安全)은 국가존립의 이유이자 목적

자치가 아니라 **경찰**에 방점을 찍어야

공법상 불가양(不可讓)의 대원칙

현 자치행정에서 재량행사권한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부터
되돌아보고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필요함.

**컴플라이언스적 윤리행정·리질리언스적 사후배려
행정, ESG.기후변화.AI시대** 자치경찰법 필요성,
자치행정집행력 확보제도로 재검토기대

17

Q&A

감사합니다



제 2 주제

발 제 3

행정수도와 지방시대를 지향하는
자치경찰제 방향과 전략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행정수도와 지방시대를 지향하는 자치경찰제 방향과 전략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목차

- I. 제도에 대한 이해
- II. 자치경찰제 개선을 위한
검토사항

검토배경

1. 논의배경
2. 자치경찰제의 개념
3. 운영현황

I. 제도에 대한 이해

1. 논의배경

■ 더 나은 자치경찰제도 마련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지점

- 자치경찰제도의 근본적 지향점과 도입된 제도의 간극
- 지역여건과 지역주민의 선호에 부합한 맞춤형 자치경찰 사무의 수행 가능성
- 광역중심의 자치경찰제도 상에서 기초지자체·읍면동(주민밀착 행정기관)과의 연계·협업방식의 가능성

■ 본 발제의 목적

-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토대로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경찰제도의 개선방안 제안

- ✓ 목적 1: 현재의 일원화 자치경찰제도 시행에 대한 맥락분석
- ✓ 목적 2: 현행 자치경찰제도의 한계검토
- ✓ 목적 2: 세종특별자치시 특수성(행정수도)을 고려한 자치경찰제도의 발전 방안제시

I . 제도에 대한 이해

2. 자치경찰제의 개념

■ 개념 정의

-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인 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조직·인사·예산·운영 등 책임을 지자체단체에 부여하는 제도
- 국가경찰제가 지역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지자체의 자기책임성이 부여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20년 12월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전면 도입
-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반하여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되, 치안은 국가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하므로 국가의 재정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 전제 존재

■ 자치경찰제의 사무

- 근거법령: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시도 조례에 따른 구체적 사항 및 범위 규정
- 경찰 사무가 본질적으로 국가사무인지 지방자치단체 사무인지에 대해서는 모호성 존재
 - 지방자치법과 경찰법 조문에 근거하면, 자치사무보다 위임사무에 가까움(수사사무는 기관위임사무, 그 외 사무는 단체위임 사무에 해당한다는 분석 있음, (성홍재,2022))

5

I . 제도에 대한 이해

2. 자치경찰제의 개념

■ 자치경찰제의 운영

-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시·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
 - 위원장 1인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구성 등 대령·조례로 정함
 -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시·도위원회 상임위원 사무국장 겸임,
 - 사무기구 경찰공무원 총정원 48명: 각 시도별 정원 총경·경정·경위 각 1명
 -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 필요시 경찰청장은 자치경찰 지휘·명령
- 자치경찰 사무: 시도위원회 및 시도경찰청·경찰서 근무 경찰공무원
 - 「경찰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총경 이상 대통령, 경정이하 경찰청장 임용, 임용권한 일부 시도지사 등 위임가능
- 자치경찰의 예산: 국가의 지자체 재정적 지원 의무
 - 시도지사는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가능
 - 자치경찰 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 후,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

6

I. 제도에 대한 이해

3. 운영현황: 조직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조직체계

| 사무국 조직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
|--------------|------------------------------------|
| 1국 3과 11팀(1) | 서울 |
| 1국 2과 6팀(9) | 부산, 대구,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 1국 2과 5팀(6) | 대전, 울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충북, 제주 |
| 1국 2과 4팀(1) | 광주 |
| 3팀(1) | 세종 |

■ 조직

- 서울이 1국 3과 11팀으로 가장 크고, 부산을 비롯한 9개 시도가 1국 2과 6팀, 대전을 비롯한 6개 시도가 1국 2과 5팀, 광주가 1국 2과 4팀 체제임

■ 인력

-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의 총 정원 453명이지만 현원은 556명으로 103명이 더 많음
- 경찰직의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안정적 조직운영을 위해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정원 현실화 요구(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2023년 6월)

출처: 한국평가원(2023)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인력현황

| 구분 | 총 인원 | | | 일반직 | | | 경찰직 | | |
|------|------|-----|-----|-----|-----|-----|-----|-----|-----|
| | 정원 | 현원 | 대비 | 정원 | 현원 | 대비 | 정원 | 현원 | 대비 |
| 서울 | 42 | 59 | 17 | 39 | 41 | 2 | 3 | 18 | 15 |
| 부산 | 27 | 39 | 12 | 24 | 28 | -4 | 3 | 11 | 8 |
| 대구 | 25 | 33 | 8 | 22 | 23 | 1 | 3 | 10 | 7 |
| 인천 | 27 | 37 | 10 | 24 | 23 | -1 | 3 | 14 | 11 |
| 광주 | 25 | 31 | 6 | 22 | 20 | -2 | 3 | 11 | 8 |
| 대전 | 25 | 25 | 0 | 22 | 19 | -3 | 3 | 6 | 3 |
| 울산 | 25 | 28 | 3 | 22 | 19 | -3 | 3 | 9 | 6 |
| 세종 | 11 | 14 | 3 | 9 | 10 | 1 | 2 | 4 | 2 |
| 경기남부 | 29 | 38 | 9 | 26 | 26 | 0 | 3 | 12 | 9 |
| 경기북부 | 25 | 28 | 3 | 22 | 20 | -2 | 3 | 8 | 5 |
| 강원 | 23 | 24 | 1 | 20 | 15 | -5 | 3 | 9 | 6 |
| 충북 | 22 | 30 | 8 | 19 | 20 | 1 | 3 | 10 | 7 |
| 충남 | 25 | 33 | 8 | 22 | 22 | 0 | 3 | 11 | 8 |
| 전북 | 25 | 30 | 5 | 22 | 20 | -2 | 3 | 10 | 7 |
| 전남 | 25 | 25 | 0 | 22 | 17 | -5 | 3 | 8 | 5 |
| 경북 | 25 | 29 | 4 | 22 | 22 | 0 | 3 | 7 | 4 |
| 경남 | 25 | 28 | 3 | 22 | 21 | -1 | 3 | 7 | 4 |
| 제주 | 22 | 25 | 3 | 19 | 19 | 0 | 3 | 6 | 3 |
| 계 | 453 | 556 | 103 | 400 | 385 | -15 | 53 | 171 | 118 |

* 주: 부산, 대구, 세종, 충북, 제주는 교육행정, 장학사 포함

* 자료: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내부자료

I. 제도에 대한 이해

3. 운영현황: 예산

- 광역 지자체별로 예산 편차가 큰 편

| 구분 | 2022년 | | | 2023년 | | |
|-------|---------|--------------|--------|---------|--------------|---------|
| | 전체 |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 자체예산 | 전체 |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 자체예산 |
| 총 계 | 193,501 | 144,896 | 48,605 | 209,005 | 18,069 | 190,936 |
| 서울 | 20,412 | 16,184 | 4,228 | 22,633 | 893 | 21,740 |
| 부산 | 11,561 | 7,558 | 4,003 | 11,958 | 3,811 | 8,147 |
| 대구 | 9,938 | 6,138 | 3,800 | 9,582 | 738 | 8,844 |
| 인천 | 10,570 | 7,204 | 3,366 | 12,028 | 808 | 11,220 |
| 광주 | 5,330 | 4,038 | 1,292 | 5,809 | 1,388 | 4,421 |
| 대전 | 7,834 | 4,238 | 3,596 | 7,576 | 2,103 | 5,473 |
| 울산 | 5,637 | 4,038 | 1,599 | 5,216 | 738 | 4,478 |
| 세종 | 1,314 | 1,023 | 291 | 1,759 | 126 | 1,633 |
| 경기 남부 | 29,667 | 22,269 | 7,398 | 32,790 | 869 | 31,921 |
| 경기 북부 | 11,595 | 8,337 | 3,258 | 13,511 | 738 | 12,774 |
| 강원 | 12,108 | 7,238 | 4,870 | 10,474 | 738 | 9,736 |
| 충북 | 7,347 | 6,038 | 1,309 | 7,462 | 738 | 6,725 |
| 충남 | 12,075 | 9,838 | 2,237 | 13,577 | 738 | 12,839 |
| 전북 | 10,046 | 8,838 | 1,208 | 12,404 | 738 | 11,666 |
| 전남 | 10,554 | 8,888 | 1,666 | 11,343 | 738 | 10,606 |
| 경북 | 11,326 | 9,545 | 1,781 | 12,190 | 738 | 11,452 |
| 경남 | 11,795 | 10,538 | 1,257 | 14,441 | 789 | 13,653 |
| 제주 | 4,392 | 2,946 | 1,446 | 4,253 | 646 | 3,607 |

✓ 제주자치경찰단 예산 314억 별도 편성

* 자료: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 2023년 예산서(본예산 기준, 일부 1차 추경반영)

출처: 한국평가원(2023)

자치경찰제 개선을 위한 검토사항

1. 맥락에 대한 이해
2.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향
3. 결론

II. 자치경찰제의 검토사항

1. 맥락에 대한 이해

자치경찰제의 도입논의 연혁(윤태웅, 2020)

- 각 정권별로 꾸준히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전개됨
- 김대중 정부부터 체계적인 논의 시작: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선정('98)
- 노무현 정부에서 기초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됨
-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지방분권법 개정(§12③, '13))에서도 기초 중심의 자치경찰제 전문시행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킴
- 문재인 정부는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 초기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형(2019년 3월 정부차원 개정안 마련)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형을 도입(자치경찰법 제정('20))

| | 이원화 모형 | 일원화 모형 |
|-------------|---|--|
| 조직 | 자치경찰본부·자치경찰대 신설 ※ 국가경찰-자치경찰 분리 | 자치경찰 별도조직 신설 ※ 지방청→시·도경찰청 변경 |
| 자치경찰 위원회 | (성격) 합의제행정기관(사무기구 ×) (권한) 주요 정책사항 심의·의결 ※ 지휘·감독 권한 × | (성격) 합의제행정기관(사무기구 ○) (권한) 주요 정책사항 심의·의결 및 시·도경찰청장 지휘·감독 |
| 사무 |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경비 등 민생치안사무 및 이와 밀접한 사무 |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경비 등 민생치안사무 및 이와 밀접한 사무 |
| 신분, 인사 | (신분) 점진적 지방직 전환 (인사) 시·도경찰위원회(시·도지사) 행사 | (신분) 경찰관 국가직 유지 (인사)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관은 시·도지사 등에게 인사권 일부위임 |

II. 자치경찰제의 검토사항

1. 맥락에 대한 이해

도입취지

-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는 과거 정부가 표방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따른 논의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특징(박준휘, 2019)
 - 수사권 조정에 따른 거대한 경찰권이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권력의 분산과 경제를 위해,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로 이전하여 국가경찰의 수사권한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
 - 경찰법 정부개정 이유를 통해 ▲지방자치를 위한 국가경찰 권한의 분권화, ▲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따른 치안서비스 제공, ▲ 비대해진 경찰권의 효율적 분산의 취지 확인 가능

초기 이원화에서 최종 일원화도입 이유

- 일원화 모형을 도입(자치경찰법 제정('20)) 논거는 다음과 같음(윤태웅, 2020)
 - 도입 논거1: 자치경찰관서 신설 등에 따른 막대한 재정(약 4조) 소요
 - 도입 논거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지구대·파출소의 중복적 운영에 따른 업무혼선 가능성
 - 도입 논거3: 초동조치 미흡 등의 우려 불식
 - 도입 논거4: 단일한 경찰조직 체계 내에서 경찰관 개인의 신분·권한 등의 변동 없이 관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판단

11

II. 자치경찰제의 검토사항

2.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향

지속적인 일원화 방식의 한계 개선필요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심층적인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일원화 모형의 도입
- 국가직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경찰의 보조활동으로서의 자치경찰 활동”이라는 한계 존재
- 국가경찰의 업무에 더해 자치경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총 경찰력 확대와 예산투입이 필요
- 다만 일원화 방식 도입시, 현행 모형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단계적 추진을 위한 과도기적 상태라는 인식에 기반했으므로 지속적인 후속모형 개발은 필수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기능 강화 필요

- 읍면동 근린단위의 조직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방식 검토필요
 - 동법상 국민은 보호의 대상일 뿐, 자치경찰기능 수행의 적극적인 주체로서의 개념정의는 희박
 - 주민의 참여부분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제한적으로 반영될 뿐
 - 주민이 자치경찰 담당사무의 목표수립과 평가 등에 직접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규정 부재
- 읍면동 근린단위의 조직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방식 검토필요
 - 동법상 국민은 보호의 대상일 뿐, 자치경찰기능 수행의 적극적인 주체로서의 개념정의는 희박

12

II. 자치경찰제의 검토사항

참고: 치안기능관련 민관협력 사항

치안과 행정의 융합을 도모하는 “제주도 행복센터” 운영

- 치안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도모
 - '20.3월 치안-행정서비스로부터 소외(출동시 20여분 소요, 노인인구 최대)된 송당리·저지리 시범운영 후,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에 대한 높은 체감도로 확대
- 구좌읍 송당 행복치안센터: 리사무소 내부 설치, 주민 직접 소통 방식
 - 근무 인력 총원(2→6명), 1인 노인가구 수시방문 및 지속적 순찰, 긴급 환자 발생 시 수송, 학교 앞 자치경찰 배치 등 치안-행정 융복합 사무 발굴·추진
- 한경면 저지리 행복치안센터: 파출소 수리 후 행복치안센터 운영
 - 수확시즌 농산물 절도 방지를 위한 주·야간 지속순찰, 치매노인 가정 정기 방문 및 실종사고 신속 대응 등 치매 극복 선도기관 지정(2021)
- 동부 행복치안센터: 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한 넓은 지역의 효율적 대응
 - 365일 교대 근무체제 도입, 도청(디지털융합과)과 협업 통한 드론 공중 순찰, 동부 중산간 주민봉사대 구성 등 민관협력 체계 구축 계획 등(2022)

출처: 전대욱 (2024)

13

II. 자치경찰제의 검토사항

참고: 치안기능관련 민관협력 사항

서울시 반려견 순찰대 “해치펫트롤” 및 “안심마을보안관

- 반려견 순찰대: 서울자치경찰위, 자치구 및 자치구경찰서, 시민단체 등
 - 펫팸족(Pet+Family) 증가에 따라 반려견과 일상적 산책 활동에 방법·순찰 임무 접목: 주민과 함께 범죄예방 문화 조성 및 치안·방범력 향상 도모
 -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서울 강동구, 강동경찰서, (사)유기견없는도시가 주민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면서 지역 방범 활동
 - 운영인원 100명 규모(확대 중), 온라인 플랫폼 활용 소통 및 위험요소 신고(등·하갯길, 수상한 자·배회 치매노인, 위험시설물 및 파손 방법시설물 등)
-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자치경찰위, 서울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서울경찰청 협업에 의한 주민 방범활동 운영
 - 빅데이터 분석 기반 다중위험평가를 통해 순찰 경로 선정, 스마트폰 앱 및 GPS 기반 순찰 진행(실시간 기록 및 모니터링)
 - 1인 가구 밀집지역에 안심보안관(선발 후 직무이론·현장교육 이수) 배치(15개소X4명), 21~02시 직접 도보순찰 및 위급상황·위험요인 등 관찰서 신고



출처: 전대욱 (2024)

14

II. 자치경찰제의 검토사항

2.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향

■ 지속적인 재정지원 제도도입 필요

- 자치경찰 재정 논의는 국가의 책임에 해당
 - 경찰법 제34조는 '국가는 지자체가 이관 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
 - 2006년 자치경찰제를 시범 도입한 제주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자치경찰의 인건비·운영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
- (중앙정부 입장) 2단계 재정분권 조치로 2조2000억원의 지방재정이 추가 확충되어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따른 사업비를 부담하자는 의견
- (지자체 입장) 담배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와 같이 주세를 재원으로 자치경찰교부세 신설하자는 의견
- (기타) 교통, 과태료, 범칙금을 이관하여 시도에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세입과 세출을 연계하는 관점에서 관련 비용을 지출하도록 구성하자는 의견

15

II. 자치경찰제의 검토사항

3. 결론

■ 명확한 권한범위 설정과 역할 부여 필요

- 수행기능에 부합하는 기구분리 및 신분부여 필요
 - 시·도경찰청 내 자치경찰사무 담당부서의 시·도 이관을 통해 실질적인 시·도지사의 지휘·감독 권한 부여
 - 약 1만8000여명 정도의 전국의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을 시·도 소속의 자치경찰관(지방특정직공무원)으로 전환
 - 지구대·파출소 소속 이관필요

■ 단층제 세종시의 커뮤니티 단위의 자치경찰기능 강화

- 커뮤니티 단위의 자치경찰 기능 부여하여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필요

참고문헌

윤태웅 (2020). 정책제안 자치경찰제 과제와 발주형안 시도지사협의회
전대욱 (2024).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를 위한 인문학적 활성화 방안 세미나 발표자료
한국평가원(2023). 자치경찰 재정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감사합니다



III

제 2 주제

토론문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만의 특색있는 자치경찰제

고철용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세종시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큰 사명 아래 출범한 계획도시입니다. 이를 위해 머지않아서 세종시에는 대통령제2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등이 건립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런 굵직한 정책사업 혹은 민감한 정쟁들로 인해서 세종특별자치시가 갖는 본질적이고 역사적인 의미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치경찰의 이원화에 대한 고찰 역시도 매 한가지가 아닌가 한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이 만들어지고 대통령 제2집무실이 온다고 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완전히 이뤘다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사업들의 실현은 국가 기능을 분산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가 진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현실적이고 본질적으로 무엇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들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전국에 14개 지자체에 10곳의 혁신도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도시가 혁신적으로 그리고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에 어느정도 이바지하는지 긍정적인 연구 결과도 있지만 실제 그곳에 사는 어쩔 수 없이 타향살이 하는 분들의 생활 여건은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떤 제도가 어떤 정책이 아무리 좋은 취지로 진행이 된다하더라도 결국 수요자인 시민들이 경제, 문화, 생활 여건 등에서 얼마나 만족하는지 그로 인해서 무엇이 파생되었고 무엇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함께 그러한 추가적이고 부수적이면서 매우 중요한 점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경찰제 이원화 역시 오늘과 같은 토론의 장을 통해서 외형적인 모델 구축과 더불어 어떻게 하면 내실을 기할 수 있는지 자치경찰의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가길 기대하며 몇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종시 재정을 고려한 자치경찰제의 운영입니다. 앞서 재정책보의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기춘 교수님과 최지민 박사님 두분 모두 언급해 주셨습니다. 세종시는 여전히 재정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외부에서 볼때는 많은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행복도시건설청이 주도하여 건립된 시설물을 세종시가 운영하는 상황이 태반입니다. 그러한 시설을 잘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수확보를 위한 인구수, 경제상황 등이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자치경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정책보가 무엇보다 필수적이며 동시에 나아가 세종시의 재정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최지민 박사님이 언급하신 재정지원 방안이라도 실현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어서 세종시의 특색을 고려한 자치경찰제 활용입니다. 세종시는 얼마전 살기좋은 도시 1위는 물론 젊고 안전한

도시로 대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시스템이 아닌 세종시의 특색인 젊고, 안전하고, 스마트한 자치경찰제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응다리에 자율주행 로봇 ‘스팟’이 있는 것처럼 스마트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구축하는 세종시의 특색을 잘 나타내는 운영도 필요하며 동시에 읍면지역처럼 경찰의 안전하고 따뜻한 손길이 여전히 필요한 지역에 맞는 운영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정책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뿌리내리고 정착하기에는 여러 쉽지 않은 과정과 풀어야 할 고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재정이면 재정, 생활여건이면 생활여건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라면 타시도의 좋은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중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외적인 형태 뿐만아니라 내적인 부분에 있어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걸맞는 자치경찰제가 운영 되기를 바라며 이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경찰 이원화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자

김광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시행 4년차를 맞은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 중 지역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등을 지자체가 담당하여,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통해 지도·감독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앞서 발제를 해주신 이기춘 교수님과 최지민 부연구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자치경찰제도가 일원화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자치의 이념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치경찰의 이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 운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안 서비스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에 현행 자치경찰제도의 한계, 자치경찰 이원화의 필요성과 법적 쟁점, 향후 정책적 과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1. 현행 자치경찰제도의 한계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핵심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행 자치경찰제도는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운영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치안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2020년 「경찰법」 전부개정(2020. 12. 22., 전부개정/2021. 1. 1., 시행)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 이하 경찰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감독권자를 분산하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법 제4조에서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제7조 이하에서 국가경찰인 경찰청과 자치경찰인 자치경찰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찰인 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인 시·도지사-시·도의회-자치경찰위원회간의 권한 및 사무를 각각 규정하면서 동시에 상호 견제를 통한 권한 분산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직을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수사경찰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치경찰로 구분하면서 국가경찰이라는 체제하에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일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행 경찰조직을 조직별·사무별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자치경찰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통제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시·도지사나 시·도의회가 통제할 수 있는지 등에 논란이 있으며, 실무상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은 경찰 내부와 자치경찰위원회 중복 보고, 지시 혼선 등의 문제를 겪고 있기도 합니다.

2. 자치경찰 이원화의 필요성과 법적 쟁점

이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원화 자치경찰’모형 마련 및 시범실시 등 제도개선이 2022년 10부터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 대상지로 정해진 세종·강원·전북·제주 4곳의 경우 올해부터 이원화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권고안조차 제시되지 않는 등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지 못한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행 경찰법상 자치경찰제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경찰법 및 하위 규정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에서 경찰조직은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 편제도 되어 있고,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 역시 경찰조직에서 떼어낼 수 없으며, 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만 설치할 수 있을 뿐이어서 조직적 측면에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 및 면직은 대통령-경찰청장-경찰대학장-시·도경찰청장이 행사할 수 있을 뿐 시·도지사는 임용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사측면의 자치권도 상당히 제한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수권조항은 경찰법뿐 아니라 지방자치법에도 없고, 오히려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폐지를 담당하고 있어 시·도지사의 자치권은 제한된다고 봐야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독립적으로 담당합니다. 경찰법에는 시·도지사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나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치경찰 이원화가 수반하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해결하고자, 경찰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자치경찰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권한 분담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법적 근거 마련화 함께 지방자치 이원화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도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발제를 통해 제안된 바와 같이 자치경찰 교부세 도입이나, 지역 내 세수 일부를 자치경찰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통 과태료와 같은 세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여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가 자치경찰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법적 장치 마련을 통해 지방의 재정 격차 차안 서비스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경찰의 운영 과정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주민 대표를 포함시키거나, 지역사회 치안 관련 사안에 대한 공론화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지방의회가 자치경찰의 활동을 보다 면밀하게 감시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중앙정부와의 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자치경찰 이원화가 중앙정부와 완전히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긴급 상황이나 전국적 차원의 치안 유지가 필요할 때는 중앙정부와 자치경찰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치경찰 이원화는 지방자치의 이상을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지정적 지원 확충, 그리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법적·정책적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자치경찰 이원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치경찰 운영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기 기대합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효율성 높은 자치경찰제도 재정립 방안

김일순 충청투데이 세종본부장

자치경찰제도는 지역의 구조와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치안서비스 처리를 통해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지방분권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경찰권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경찰조직을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도 지운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휘나 감독체계로 운용되는 국가경찰의 형태가 아니라 지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지역민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내에서 관할구역 내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기구가 각각 별개로 설치, 운영되는 이원적 모형이나 자치경찰만 운영되는 일원적 모형도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즉, 국가경찰제도의 기본적인 모형을 유지하면서 경찰사무만을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분리하고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집행과 지휘 감독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중적으로 운영하는 이원화 모델이 제시됐지만, 관서의 이중설치와 인원 및 장비의 이중 배치, 예산 증가에 따른 재정상의 어려움에 업무 혼선과 치안 공백 등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다. 그러면서 별도의 자치경찰조직을 만드는 대신에 기존 국가경찰조직에서 사무만을 분리하는 방법이 선택됐다. 소속은 현행을 유지한 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감독하는 일원화 모델이 진행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일원화 된 자치경찰제 모델은 동일한 경찰관서에서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사무 및 수사경찰사무가 동시에 이뤄진다. 또 지방행정에 의한 치안서비스의 자율적 처리 확보와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찰활동의 특성상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가 중첩돼 업무의 한계를 구분하기 애매하고 지휘 감독 체계가 불명확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치안활동이 이뤄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치경찰제의 본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이념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운용방법을 마련하고 입법적인 개선작업을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지역민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자치경찰 및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지방직화, 자치경찰본부 및 자치경찰대 등의 신설을 통한 자치경찰조직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자치경찰조직에 대한 관련법 개정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융합 행정형태 및 미니 경찰서 형태 도입 등도 논의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에 기반을 둔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별 상황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 모델을 정착해야 한다. 지역 특색에 맞는 치안 정책을 제공하고 지방행정과 연계된 종합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기존 국가경찰제도와 차별화를 꾀해야 한다. 지역별로 요구되는 치안서비스가 다른 만큼 국가법령으로 모든 것을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조례를 통한 자치입법권의 확대도 필요해 보인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자기책임성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시도 경찰청장 추천권은 경찰청장과 협의하기보다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하는 것도 자치경찰제 이념과 부합한다는 의견도 있다.

실질적인 행정수도인 세종시도 지역적인 상황과 여건,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를 운용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자리한 국가행정의 중심지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실현되는 상징성을 갖고 있어 선도적인 역할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도시의 성격이 행정기관 중심이라는 점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단층제 행정구조라는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해 향후 예정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등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경호와 교통관리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업무 간 협력 관계도 중요하다. 세종시의 면적이 서울시의 77%에 달할 만큼 치안업무를 담당해야 할 관할 면적도 넓다. 여성과 아동 등의 비중이 높다는 점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완전하게 분리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체제는 시기상조라고 본다. 현시점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대등하면서 협력적으로 운영되는 통합형 체제가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적이라고 분석한다. 자치경찰제는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와 함께 지방자치의 세 가지 큰 축에 해당한다. 자치경찰제의 성공이 곧 지방자치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가 궁극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주권자로 치안정책 수립과 시행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치안서비스 제공자 역할도 해야 한다. 현재 드러난 자치경찰제의 오류를 극복하고 지방자치의 이념과 취지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토론문

박점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안전과장

□ 세종자치경찰위원회 현황

○ 설치근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하에 자치경찰위원회를 두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독립적으로 직무 수행

※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는 붙임파일 참조

○ 역할: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

○ 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1, 사무국장1, 위원5)

- 시의회(2명), 국가경찰위(1명), 교육감(1명), 위원추천위(2명) 추천, 시장(1명) 지명, 임기 3년에 연임 불가

○ 조직: 일반직(정원 9명/현원 10명), 경찰직(정원 2명/현원 3명) <'24.9.23.기준>

- 일반직: 시청 7명, 교육청 3명(파견), 경찰직: 3명(파견) 총 13명

※ 세종은 3팀으로 가장 작고, 서울이 1국 3과 11팀으로 가장 크며, 부산을 비롯한 9개 시도가 1국 2과 6팀, 대전을 비롯한 6개 시도가 1국 2과 5팀, 광주가 1국 2과 4팀 체제임



○ 협의체: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정책지원단, 분과위원회*(’24.7.30. 폐지)

* 여성청소년(생활교육담당 장학관), 교통(안전기획담당 사무관), 생활안전(해당없음)

○ 예산: 17개 시도 중 가장 적음(1,759백만원, ’23년도 기준)

- ①경기 남부(32,790백만원) > ②서울(22,633백만원) > ③충남(13,577백만원)

○ 주요 의결사항: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평가, 인사·예산·장비·통신 등 주요정책 및 운영지원, 담당 공무원 임용·평가, 인사위원회 운영, 감사 및 감사의뢰, 중요사건·현안의 점검 등

□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 실무협의회: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 당연직 위원(5명): 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세종시교육청 학교안전과장, 세종시 안전정책과장, 세종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장, 세종경찰청 생활안전교통과장

- 정기회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 안건이 없을 때 미개최

○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교육청 소관 안건 제출('23년 2건, '24년 3건)

| 구분 | 일정 | 안건 |
|----------|---------------|---|
| 2023-22차 | '23. 5.12.(금) | <p>□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p> <p>- 옥상출입문 개폐장치 설치에 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의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교육청에서는 학생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교육, 학부모교육, 캠페인,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p> |
| 2023-23차 | '23. 6. 9.(금) | <p>□ 학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면허인증절차 및 단속강화</p> <p>- 공유 전동킥보드 '면허인증절차 및 불법행위 단속' 강화는 교육청에 추진 권한이 없어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24. 현재)</p> <p>-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인식개선 · 안전교육 추진(~'24. 현재)</p> |
| 2024-33차 | '24. 4.12.(금) | <p>□ 2024년 상반기 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협조</p> <p>- 관내 전체학교(149교)를 대상으로 통학로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합동 현장점검 결과 노면도색, 차선규제봉 및 볼라드 파손 등 총 67건(49교)이 발견되어 개선 협조</p> <p>□ 세종경찰청 자전거 순찰대와 함께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추진현황</p> <p>- 안전교육 시 안전모 미착용, 2~3인 탑승제한, 면허증이 있는 학생만 PM을 탈 수 있어 고등학생도 면허를 취득한 자에 한해 PM을 탈 수 있음을 요청</p> |
| 2024-35차 | '24. 9. 6.(금) | <p>□ 도담동 BRT버스정류장 인근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 협조</p> <p>- BRT버스정류장 구조물 개선, 인접한 횡단보도 이격 거리 조정, 보행자를 위한 교통안전 표지판 및 도로 반사경 설치 등 건의</p> |

□ 세종자치경찰위원회 협조사항(제안점)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

-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 예방

나. 지역 내 교통활동

-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
-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및 계도·단속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별표 1]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제2조제1항 관련)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 자치경찰사무 | 범위기준 | 구체적 사항 및 범위 |
|-------------------------|--|---|
|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 가)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설치·운영 | ① 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범죄 예방환경설계(CPTED)사업 추진 ②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
| | 나)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진단 | ① 지역·건물의 범죄취약요소 현장진단 및 점검·관리 ②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시행 ③ 범죄예방 강화구역 관리 등 범죄예방진단팀(CPO) 운영 |
| | 다)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 ① 시기별·테마별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②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지역안전순찰 등) 제도 시행 ③ 은행·편의점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 범죄예방활동 시행 |
| 2) 주민참여방범 활동의 지원 및 지도 | 가)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 | ①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협업 및 지원·지도 |
| | 나)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 ① 지역주민 대상 범죄예방요령·범죄예방교실·시민경찰학교 등 홍보활동 ②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합동순찰 등) |
|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시 긴급구조지원 | 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지원 | 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구조지원 |
| | 나) 재해 발생 시 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등 | ① 재해 발생 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② 재해 발생 지역의 교통관리 등 |
| | 다)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지역 내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

| | | |
|--|---|---|
|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 | 가)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보호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범죄 예방환경설계(CPTED) 사업 추진 ②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
| | 나)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종 예방·대응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건물의 범죄취약요소 현장진단 및 점검·관리 ②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시행 ③ 범죄예방 강화구역 관리 등 범죄예방진단팀(CPO) 운영 |
| | 다)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기별·테마별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②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지역안전순찰 등) 제도 시행 ③ 은행·편의점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 범죄예방활동 시행 |
| | 라)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보호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소년 비행방지, 선도·보호 활동 ② 위기청소년(가해학생·피해학생,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 면담·관리 ③ 위기청소년 발굴(거리상담 등) 및 유관기관 연계 ④ 소년범 선도제도 운영(선도프로그램선도심사위원회, 전문가참여제, 우범소년 송치) ⑤ 경찰의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대한 청소년 참여제도 운영(정책자문단 등) |
| | 마)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정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가정폭력(긴급)임시조치 ③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보호기관 등 연계·지원 ④ 가정폭력사안 대응(협업회의 참석, 가·피해자 조사 등) ⑤ 가정폭력관련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
| | 바) 학교폭력의 근절·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교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학교폭력 사안대응(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참석, 117사안대응, 가해자·피해학생 조사 등) ③ 청소년육성회 등 지역 내 학교폭력 유관단체와 협업 업무 ④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⑤ 학교전담경찰관(SPO) 운영 |
| | 사)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등 보호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성폭력범죄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

| | | |
|---|--|--|
| <p>아) 그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예방 업무</p> | <p>그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예방 업무</p> | |
| <p>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p> | <p>가) 경범죄위반행위 지도·단속 등 공공질서 유지</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범죄 위반행위 단속(다만, 과태료 등 지자체 행정처분 사항은 제외한다) ② 지역 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 대상 계도 및 홍보 등 |
| | <p>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풍속·성매매사범 및 사행행위 지도·단속</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풍속영업의 지도·단속 ② 성매매 단속 ③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④ 사행행위 지도·단속 |
| | <p>다) 그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업무</p> | <p>그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업무</p> |
| <p>6) 그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p> | <p>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정폭력, 학교폭력, 이동학대, 실종 등 자치경찰 수사사무 관련 신고 처리 ② 풍속영업, 기타경범죄, 주취자 등 지역 질서유지 관련 신고 처리 ③ 분실습득, 보호조치, 상담문의 등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신고 처리 |
| | <p>나) 유실물 보관·반환·매각·국고귀속 등 유실물 관리</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실물 처리업무 계획 및 지도·감독 ② 습득물·분실물 신고접수 및 보관 ③ 유실자 확인 및 습득자 소유권 취득시 물건 인계 ④ 법정기간 만료 시 국고·금고 귀속 ⑤ 유실물 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 | <p>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응급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응급구호대상자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 긴급구호 요청, 인계 및 경찰관서 임시보호 등 임의 조치 ② 응급구호대상자 휴대 무기·흉기 임시영치 ③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④ 그밖에 응급구호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 |
| | <p>라) 그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p> | <p>그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p> |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 자치경찰사무 | 사무의 범위 기준 | 구체적 내용 |
|--|--|--|
|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 가) 교통법규 위반지도·단속, 공익신고 처리 등 |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음주·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처리 ③ 그 밖에 교통법규 위반신고 처리(영상단속, 방문 신고 등) |
| | 나) 음주단속장비 등 교통경찰용 장비 보급·관리·운영 등 |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음주단속장비 등 구매·보급 ② 음주단속장비 등 검정·교정 ③ 음주단속장비 등 노후장비 교체 |
|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 가) 교통사고 예방,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운영 |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활안전협의회·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협업 및 지원·지도 |
| | 나)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주민 대상 범죄예방요령·범죄예방교실·시민경찰학교 등 홍보활동 ②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합동순찰 등) |
| | 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운영 |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운영 ②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우선 설치장소 선정 심의 |
|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가)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교육계획 수립·시행 ② 교안, 리플렛 등 교육자료 제작·배포 |
| | 나)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홍보계획 수립·시행 ② 교통안전 홍보물품 구매·보급 |
|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 가)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에 대한 운영·관리 |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 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단체 구성 ②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 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 단체의 교통안전 지원활동 관리 |
| | 나) 주민참여형 교통안전활동 지원 및 지도 |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무사고 운전자 선발·관리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안내 |
|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 가) 차마의 안전기준 초과 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및 차로폭 초과차 통행허가 처리 |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전기준 초과승차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② 안전기준 초과적재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③ 차로폭초과차 통행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

| | | |
|--------------------------------|---------------------------------------|---|
| | 나) 도로공사 신고접수,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도로점용허가 필요 조치 ② 도로공사 신고 관련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 조치 |
| | 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신고접수·관리 및 관계기관 합동 점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접수 및 신고증명서 발급·재교부 ②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및 계도·단속 |
| | 라)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긴급자동차 지정증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③ 긴급자동차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 |
| | 마)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③ 긴급자동차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 |
| | 바)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견인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취소·정지 및 지정증 회수 |
|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 가)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통사고, 사망·대형사고 신고 처리 ② 음주운전, 교통위반 신고 처리 ③ 교통불편 신고 처리 |
| | 나)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운전면허 발급·재발급·갱신 신청·접수·교부 ②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접수 ③ 국제운전면허 신청 접수 및 교부 ④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⑤ 그 밖에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
| | 다)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교통정보 연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② 교통정보 연계(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등과의 연계) |
| | 라) 정체 해소 등 소통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출·퇴근 시간대 및 상습 정체 구간 주요 교차로에서의 교통관리 ② 안전사고·재해·재난 발생 시 이동로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통제 및 관리 |

| | | |
|--|--------------------|--|
| | 마)지역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기별·취약대상·위험요인별 지역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② 지역 교통안전협의체 구성·운영 등 교통안전 분야유관기관 협업 |
| | 바)교통안전 관련기관 협의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 교통영향평가, 교통성 검토 등 교통소통 관련 협의 ② 「도로법」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등 관련 협의(도로관리청이 국토부장관인 경우는 제외) ③ 「교통안전법」상 안전진단, 사고조사 관련 협의 ④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관련 협의 ⑤ 그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한 사무

| 자치경찰사무 | 사무의 범위기준 | 구체적 내용 |
|------------------------------|---------------------------------------|--|
| 지역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 가)지역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중운집 행사장 주변 주요 교차로 소통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지원 ② 행사장 주변 보행자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활동 지원 |
| | 나)지역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원 ② 행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활동 지원 |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효율성 높은 자치경찰제도 재정립 방안

박충서 세종남부경찰서 형사과장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 '자치경찰 이원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21.10월 실종 업무가 여성청소년과에서 형사과로 업무 이관, 최근 실종 업무 증가로 인해 시청, 교육청, 보건소, 광역정신보건센터, 소방서, 시민단체 등 관련 기관 간의 협력강화와 총력 대응체계 구축 필요하나 경찰만으로는 한계, 이를 위해 자치경찰 사무 논의 시 실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실종 예방, 홍보, 교육, 수색 업무에 대한 논의 필요

○ 실종 신고 처리 현황

| 구분 | 계 | 가출인 (위험방지 포함) | 치매노인 | 실종아동 | 지적장애등 (18세 미만) | 지적장애등 (18세 이상) |
|-------------------|----------------|------------------|------------|--------------|-------------------|-------------------|
| 금년누계 (전년동기간누계) | 1,354 (894) | 811 (491) | 83 (32) | 406 (318) | 12 (8) | 44 (12) |
|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감 | ▲51% | ▲65% | ▲159% | ▲28% | ▲50% | ▲214% |
| 23년도 현황 | 1,420 | 825 | 52 | 511 | 12 | 20 |

※ 세종남부경찰서의 2024년 9월 21일 통계에 따르면, 올해 실종 건수는 1,354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51% 증가한 수치다. 특히 치매노인의 실종은 83건으로 159%나 급증, 더 이상 우리 가족, 우리 이웃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배경** : 최근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치매노인 등 실종 업무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 이에 따른 실종 예방, 교육, 조기 발견을 위해서 보호자, 시민단체, 시청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과 실종자 신속 발견을 협업 시스템 구축 필요

○ 문제점 및 대책

- 치매노인 실종 예방 등을 위한 시민 대상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 필요
- 치매노인에게 지문 사전등록, 인식표 착용과 GPS 위치 추적기 제공 등이 중요하나 치매노인 배회기, 인식표 등 실종 예방, 실종 발견자 포상 등 관련 예산 확보 노력
- 세종시의 경우에도 전남, 전북, 제주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를 조속히 제정, 법적 지원과 실종경보 협력 체제 구축

※ 실종자 발생을 줄이고, 실종자가 생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장치 마련

- 정보센터 지능형 CCTV 고도화와 인력 부족에 따른 경찰관 공백을 퇴직 경찰관 채용, 정보센터 실종자 찾기와 범죠평

모니터링 운영, 범죄예방 교육 요원으로 활용

- 시청·시의회, 보건소, 소방, 교육청, 광역정신보건센터 등 총력대응 협업체제 구축

○ **결어**

국가경찰 업무를 경감하여 강력범죄에 적극 대응, 서로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모두에게 이득

토론문

서준배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장

대한민국 경찰 창립 76년 만에 도입된 자치경찰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공동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보다 민주적이고 분권적인 경찰제도가 헌정사상 최초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물론 현 자치경찰제도는 국가경찰에서 별도의 자치경찰을 분리하지 않는 일원형 모델로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합의제 자치경찰 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무분리형 모델로 설계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럽과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 모델이 아니고, 생활안전, 지역 경비와 교통, 여성청소년 등 주민밀착형 치안사무를 소관으로, 인사권도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또 이러한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점 등에서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 나라의 경찰제도는 그 나라 고유의 문화, 역사, 전통의 산물이며 특히 현 일원형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배경에는 수사권 조정과 맞물린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 경찰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필요성,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의 대확산에 따라 국가 재정부담의 최소화라는 특수한 배경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지역 균형발전의 중심도시로서 특히 청소년과 청장년층이 많고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신생 도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기초자치단체이지만 행정수도로서의 특별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성격도 갖는 이중성을 갖는 도농 복합도시이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처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상임으로 되어 있었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2022년 10월 27일 자로 위원 비상임 및 사무국 미설치를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특례조항이 폐지되어 다른 시도위원회와 동일하게 사무국이 설립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상 운영이 가능해졌다.

지역에 따라 범죄예방, 사회적약자 보호, 교통안전, 시민과의 소통 등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선 그 지역에 맞는 이원화 모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세종의 경우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신도시가 있고, 조치원읍과 같은 구도시가 이와 함께 공존하고 있다. 또한, 출산율, 평균 연령, 공무원 도시, 스마트 시티(5생활권) 등 타 지역과 다른 면이 많이 있는 도시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구 39만으로 광역자치단체 중에 그 규모가 가장 작아서 어떤 모형이든 적용하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의 경우 대륙계, 특히 프랑스의 자치경찰을 롤모델로 하고 있다고 한다. 굳이 치안과 치안서비스를 구분한다면, 치안서비스에 특화된 이원화 모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영미계, 특히 런던 경찰과 같은 완전한 이원화 모형은 구현된 적이 없으나 과거 서울시에서 런던 경찰과 같은 완전한 이원화 모형을 주장한 적이 있다.

세종의 경우 규모 면에서는 서울시가 제시한 완전한 이원화 모형을 적용하기에 적합해 보이기 는 하지만, 현재의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에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의사당, 세종 대통령 집무실 등을 봤을 때, 국가경찰의 역할도 타 시도에 비해 상당 부분 필요한 특성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원화 모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참여와 민주적 통제장치 확보가 중요할 것이다. 이원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시민참여와 같은 민주적 통제장치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에 대한 통제는 지역주민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통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 예전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민주적 통제장치로 '주민 옴부즈만(ombudsman)' 행정권의 확대·다양화 및 재량권의 증가에 따른 권리 보호의 불충분에 대하여 의회의 개입을 통한 행정 구제 제도의 결함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는데, 옴부즈맨은 고대 스웨덴어로 대리인(agent)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헌 내지 부정한 행정 활동에 대하여 비사법적인 수단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임.

제도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 제도는 영국의 IPCC(Independent Police Complaints Commission, 독립적 경찰 민원 조사위원회)를 모델로 시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자치경찰의 경찰권 남용이나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시민이 담당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하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치경찰에게 지역의 주민과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할 방안으로 기존 주민자치회 등과 연계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상호 의견 및 정보교환, 의견수렴의 기회를 얻는 것이 중요하며 1주일 혹은 월 단위의 구역별 모임을 통해 소통의 장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자치경찰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세종특별시장 주재 아래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 운영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9년 10월 16일 일부 개정, 기존 간사 1명 에서 2명으로 확대, 세종지방경찰청 지역치안업무 담당과장 및 시 지역치안협의회 업무담당 과장(신설) 이외 위원 중 당연직 지정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 의결함.

되고 있어 이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세종특별시장은 관할 구역 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교육 분야 대표, 국가경찰, 소방, 마을공동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해 지역 내 아파트, 상가, 학교지역 등을 중심으로 범죄예방, 교통안전 등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도록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치안협의회 관계자들의 경우 지역사회 기관장, 단체장 등의 정기적 모임의 성격으로 여겨, 실질적인 의사 결집과 정책 판단 등 순기능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 아울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경찰과 주민 간 의사소통이 미흡할 뿐 아니라 문제 지향적 경찰 활동에도 한계를 드러냈다.

단층제적인 특성 기초자치단체 없이 광역자치단체가 실제 행정을 집행하는 형태의 운영을 말함.

을 가진 세종시의 상황을 고려해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 지역사회 치안 문제의 발굴,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등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 내 자치경찰 주도의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셋째, 국가경찰 체제하에 지역 밀착 민·관 협력적 치안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데,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지구대, 파출소는 관할 지역의 치안유지, 방법 순찰 등 임무를 수행하는 기초 치안 활동 중심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112종합상황실의 소속으로 되어 있어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 한계를 보인다. 자율방범대의 경우 협력적 치안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중요한 대표조직으로 지역주민과 친밀한 경찰상 제고에 그 효과가 크며, 저비용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율방범대의 관리 감독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이어서 경찰과 함께 치안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기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치안의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려면 지역경찰과 주민 간 상호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단위에서 자율방범대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규정이 미비할 뿐 아니라 읍면동 단위의 행정기관, 다른 주민조직과도 연계성이 매우 취약해, 지역주민과 협력적인 치안 서비스, 공동서비스의 공동창출 차원에서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러한 시각에서 읍면동 단위에 자율방범대, 자전거 순찰대, 의용소방대, 녹색어머니회, 청년회 등 다양한 마을공동체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의 의제를 도출함으로써 읍면동 행정, 관할 지구대 파출소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

세부 방안으로 자율방범대의 경우 취약 시간대 중심 순찰 및 방범 활동 전개, 아동·청소년 보호와 같은 지역의 현안은 아동안전지킴이, 녹색어머니회, 학생 및 학부모 순찰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지역주민과 협력 치안 파트너십을 안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지역주민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이해당사자들 간 분기별 혹은 월별 간담회 등 회의를 정례화하고 관할 구역 내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공동대처, 민간 경비 업체 등과도 협력 치안을 위한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부산 해운대 관광지의 치안 문제와 세종시 BRT 도로 교통 문제는 달라야 한다.

성은정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위원

1. 자치경찰제는 여전히 한국사회와 한국 시민사회에 낯선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함께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더욱이 수사권 조정 시행과 함께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경찰서비스가 실현되어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한편 시민사회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를 크게 세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비대한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 분할하여 권한의 집중을 해소하고 분권화를 위해서, 둘째 다양하게 추천받아 구성된 시도경찰위원회가 지방경찰청장 추천 등, 자치 경찰에 대한 관리를 맡아 민주적 통제 강화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요청되는 치안서비스가 다른만큼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그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안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1)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분권이 강화되었는가?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시도경찰위원회가 생겼지만, 국가경찰 조직과 인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시도경찰청이 국가경찰과 국가수사본부의 감독과 지휘를 받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분권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명분만 가져갔을뿐 실질적인 변화나 분권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2) 자치경찰위원회로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었는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추천권, 자격 문제는 제도 시작부터 꾸준히 문제제기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성별 균형을 맞추고, 인권전문가가 들어갈 여지를 확대해야 한다. 시도지사가 사실상 지명하는 위원장에 대한 최소한의 청문 절차를 통해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도덕성과 정책검증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구성원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 자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3) 지역의 치안수요에 맞춤형 치안서비스의 질 개선이 가능한가?

2021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지만, 치안서비스의 실질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아직까지 가늠하기 어렵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의 특색과 특성에 따른 치안수요를 발굴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하여 치안서비스의 개선에 나설지는 조금 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시민 참여의 검토

1)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에서의 시민 참여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에서 시민 참여의 방법은 '지역주민' 자격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은 없다.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시민추천 절차를 두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시도지사와 시도의회가 임의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천거를 사전절차를 두는 방식이다.

2)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 평가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대한 평가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평가과정에서 설문조사나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시민참여라고 보기 어렵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평가위원회 구성에서 전문가가 아닌 시민의 비율을 50% 정도 보장하여 시민들이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직접 평가하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 자치경찰제 및 경찰 감시 시민사회활동 활성화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착되고,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찰 활동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지역 단체의 특성을 살려 각 지역 자치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의 활동을 모니터하고 비판하는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제 개선 방향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형」으로 대전환

○ 시·도경찰청 자치경찰사무 사무·조직·인력·예산 등 시·도로 일괄이관

- 역대 정부 자치경찰제 추진의 주요 내용

| 구분 | 김영삼 정부 | 김대중 정부 | 노무현 정부 | 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 |
|---------|--------------------|--------------------|--------------------|--------------------|----------------------------|
| 도입단위 | 기초자치단체 (시·군) | 광역자치단체 (시·도) | 기초자치단체 (시·군·자치구) | 기초자치단체 (시·군·자치구) | 기초자치단체 (시·군·자치구) |
| 자치경찰 사무 | 주민밀착사무 (생활안전·교통 등) | 주민밀착사무 (생활안전·교통 등) | 주민밀착사무 (생활안전·교통 등) | 주민밀착사무 (생활안전·교통 등) | 주민밀착사무 (생활안전·교통 등) 및 특사경사무 |
| 자치경찰 신분 | 지방공무원 (경찰서 이하) | 지방공무원 (경정 이하) | 지방공무원 (자원 전환) | 지방공무원 (자원 전환) | 지방공무원 (자원 전환) |
| 자치경찰 재원 | 지방양여금 | 지방부담 원칙 (국가 한시지원) | 지방부담 원칙 (국가 한시지원) | 범칙금·과태료 (국가 한시지원) | 지방소비세 및 범칙금·과태료 |

○ 시·도지사 소속 ‘(가칭)자치경찰본부(치안정감·치안감급)’ 설치·운영

- 시·군·구에 ‘(가칭)자치경찰대’ 설치·운영 및 일부권한 기초자치단체장 부여

○ 국가경찰 신분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의 자치경찰(지방직) 전환

- 자치경찰 전환 시 자원(自願)에 의하도록 하되, 부족 인력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적정 범위 내 신규채용 추진 및 국가경찰 파견 등 인사교류 통해 충원

※ 시·도지사가 적정 범위 내 신규채용 추진

※ 국가경찰(128,107명) 가운데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약 18,320명(14.3%)으로추산(’22년 11월 기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별 문의 결과)

○ 지구대·파출소를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기관으로 편제 개선

- 신속·원활한 지역치안서비스 제공 및 주민 체감·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지역주민의 최접점 일선기관인 지구대·파출소의 자치경찰 전환 긴요원

※ 국가경찰(128,107명) 가운데 지구대·파출소 근무인력 50,668명(39.6%) 정도(’21년 기준) → 시·도 소속의 자치경찰관으로 전환 추진

○ 4개 특별자치시·도 대상 이원적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관련, 법령·조직·예산 등이 확보된 제주에 대해서는 보다 심화·발전된 ‘이원적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검토

□ 시·도지사의 권한과 책임 일치

- 지역 대표이자 지방행정 총괄책임자인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 사무권·인사권 및 지휘·감독권 등 제반 권한·책임 부여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견제·감시기구화

-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에 대한 각종 권한을 총괄·담당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및 시·도 정책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견제·감시 기능을 담당하는 심의·의결기구(합의제행정기관 유지)로 전환

□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자율권 확대

- 「경찰법」 등 관계법령 개정 통해 자치경찰사무를 포괄적으로 규정
- 법률에는 자치경찰사무의 분야(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만 명시
- 각종 세부사항·기준 등을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결정하도록 개정

□ 국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보장

- 교통 범칙금·과태료 활용 및 ‘(가칭)자치경찰교부세’ 신설 통해 지원 추진
- 자치경찰제 예산 현황('23.11 기준)

| 국가예산(행안부) | | 시·도예산 | | | 총계('23년) |
|-----------------|-----------------|-----------------|--------------------|------------------|---------------------|
| 국고보조금 (운영비) | 특교세 (행안부) | 운영비 (인건비 포함) | 사업비 | 맞춤형 복지비 | |
| 130억원 (5.9%) | 114억원 (5.2%) | 156억원 (7.1%) | 1,528억원 (69.7%) | 265억원 (12.1%) | 2,193억원 (100.0%) |

□ 지방 참여의 ‘자치경찰제 개선 추진단’ 구성·운영

- 지방시대위원회 내 ‘(가칭)자치경찰제 개선 추진단(또는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행정안전부, 경찰청,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도, 전문가 등 참여
- ※ 기재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계부처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참여 가능
- 지방시대기획단 내 상시 정책·지원기구로서 ‘(가칭)자치경찰제도과’ 설치·운영*
- * 행정안전부, 경찰청, 시·도, 제주자치경찰단 등 파견인력으로 구성

【새 정부의 자치경찰권 강화 관련 국정과제】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국정과제 제안사항(2022.4.27)

- (자치경찰권 강화) 국가로부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 도입 통해 시·도 소속 자치경찰이 자치경찰 사무 집행, 시·도지사가 지휘권·인사권 행사,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 자치경찰 시범사업 검토

※ 현정부 <120대 국정과제(2022.7.26)>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 (자치경찰권 강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 마련 및 제주·세종·강원 시범실시 후 성과분석·제도개선 통해 전면 시행(전북특별도 출범('24.1)에 따른 대상지역 포함)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